

발 간 등 록 번 호

연구보고서 2013-12-0002

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 II.

-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발 간 등 록 번 호

연구보고서 2013-12-0002

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 II.

-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 II.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 김기현(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경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구개발팀 팀장)

이지연(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구개발팀 상담원)

장희선(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문선영(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손나윤(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추구한다.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은 아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상기하면서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우리는 아동 권리 옹호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다짐을 밝힌다.



사명 선언

우리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 능력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한다.



행동 강령

- 하나, 우리는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에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전문인다운 자세를 유지하며, 책임감 있게 실천한다.

실/천/수/칙

1. 아동에 대한 실천

1. 아동 이익 최우선

- 아동을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행정적·사법적·사회적·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개별 욕구 존중

- 아동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알 권리 및 의사표현 존중

- 아동에게 그들이 받을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 아동에게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사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4. 차별 금지

- 아동의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의 신념, 관습, 문화 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5. 사생활 존중 및 보호

-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단, 아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발달권 보장

- 아동이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아동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II. 가족에 대한 실천

1. 가족 지원

-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심리적·정서적·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2. 부모 교육

- 보호자에게 아동의 권리, 발달과정,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을 교육한다.

III. 사회에 대한 실천

1. 아동 권리 홍보

-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2. 아동 권리 교육

- 아동은 권리의 주체임과 그 권리 보호는 모든 국민의 책무임을 알린다.
- 아동학대는 생애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임을 교육하여 그것을 예방한다.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협력체계 구축

- 아동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4. 국가 정책 참여

-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련 정책 입안 과정과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IV. 전문가로서의 실천

1. 윤리적 책임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2. 전문가적 판단

-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하게 사안을 판단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정보 보호

-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유출 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련 지침을 따른다.
-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옹호자 역할 수행

- 아동학대 관련인의 의사 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아동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한다.

5. 자기 계발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

2008. 11. 19. 공포

목차

아동학대 사례 분석연구 Ⅱ.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I	서론	1
II	연구방법	7
	1. 연구대상	9
	2. 시설 아동학대 분석을 위한 코딩시스템	11
	3. 코딩시스템에 포함된 시설 아동학대 관련 변수	13
	4. 코딩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	15
III	연구결과	17
	1. 연도별 신고, 조사 및 학대판정	19
	1) 판정유형별 사례 수	19
	2) 판정유형별 시설수 대비 판정 아동수	20
	3) 지역별 분포	21
	2.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22
	1) 아동 성별	22
	2) 아동 연령	23
	3) 아동 장애 유무	24
	3. 학대행위자의 인구학적 특성	25
	1) 학대행위자 성별	25
	2) 학대행위자 연령	25
	3)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간의 관계	26
	4. 시설 특성 및 유형	27
	1) 시설 유형	27
	5. 시설 아동학대의 특성	28
	1) 신고자 유형	28
	2) 시설 아동학대 유형별 분포	29

3) 시설 학대유형별 특성	30
4) 학대발생 빈도와 기간	39
6. 아동학대사례 최종조치 결과	44
1)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	45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48
3) 시설 운영에 대한 최종조치	49
7. 학대 판정유형에 따른 비교	50
1)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비교	51
2)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56
3)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60
8. 최종조치 결과에 따른 비교	64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최종조치	64
2) 최종조치 수준에 따른 집단비교	69
9. 판정관련 증거에 따른 판정유형별 비교	80
1) 학대사례와 잠재사례 비교	81
2)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83
3)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85
4) 학대유형별 차이	86
5) 최종조치별 차이	89
10. 시설 아동학대사례 조치 및 미조치 결과	95

IV	결론	97
-----------	-----------	-----------

1. 결과요약	99
2. 시사점	105
3. 제언	109

V	참고문헌	113
----------	-------------	------------

목차

아동학대 사례 분석연구 Ⅱ.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표 목차

〈표 Ⅱ-1〉 최근 3년간 시설 아동학대 판정사례 유형별 시설 수	9
〈표 Ⅱ-2〉 코딩시스템에 포함된 시설 아동학대 관련 변수	13
〈표 Ⅲ-1〉 판정유형별 사례 수	20
〈표 Ⅲ-2〉 판정유형별 시설 수 대비 판정 아동 수	20
〈표 Ⅲ-3〉 지역별 분포	21
〈표 Ⅲ-4〉 아동 성별	22
〈표 Ⅲ-5〉 아동 연령	23
〈표 Ⅲ-6〉 아동 장애유무	24
〈표 Ⅲ-7〉 학대행위자 성별	25
〈표 Ⅲ-8〉 학대행위자 연령	26
〈표 Ⅲ-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간의 관계	26
〈표 Ⅲ-10〉 시설 유형	27
〈표 Ⅲ-11〉 신고자 유형	28
〈표 Ⅲ-12〉 아동학대 유형별 분포	29
〈표 Ⅲ-13〉 중복학대 유형별 분포	30
〈표 Ⅲ-14〉 신체학대 유형 (중복포함)	32
〈표 Ⅲ-15〉 신체학대 도구 사용여부	33
〈표 Ⅲ-16〉 신체학대 사용도구 종류	34
〈표 Ⅲ-17〉 신체학대로 인한 손상	34
〈표 Ⅲ-18〉 성학대 유형 (중복포함)	35
〈표 Ⅲ-19〉 정서학대 유형 (중복포함)	36
〈표 Ⅲ-20〉 방임 유형 (중복포함)	38
〈표 Ⅲ-21〉 신체학대 발생 빈도	39
〈표 Ⅲ-22〉 신체학대 발생 기간	40
〈표 Ⅲ-23〉 정서학대 발생 빈도	41

〈표 III-24〉 정서학대 발생 기간	41
〈표 III-25〉 성학대 발생 빈도	42
〈표 III-26〉 성학대 발생 기간	43
〈표 III-27〉 방임 발생 빈도	43
〈표 III-28〉 방임 발생 기간	44
〈표 III-29〉 아동학대사례 최종조치 유무	44
〈표 III-30〉 전체 피해아동 최종조치 유무	45
〈표 III-32〉 전체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중복포함)	46
〈표 III-31〉 시설 단위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유무	47
〈표 III-33〉 시설 단위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중복포함)	47
〈표 III-34〉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유무	48
〈표 III-35〉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 (중복포함)	49
〈표 III-36〉 시설 최종조치 유무	49
〈표 III-37〉 시설 최종조치 결과 (중복포함)	50
〈표 III-38〉 전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비교 ·	52
〈표 III-39〉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비교	55
〈표 III-40〉 전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57
〈표 III-41〉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59
〈표 III-42〉 전반적인 특성에 따른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	60
〈표 III-43〉 학대유형별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63
〈표 III-44〉 판정유형별 최종조치 유무	65
〈표 III-45〉 대상별 최종조치 유무	66
〈표 III-46〉 피해아동 최종조치 세부사항 (중복 포함)	67
〈표 III-47〉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세부사항 (중복포함)	67
〈표 III-48〉 시설 최종조치 세부사항 (중복포함)	68
〈표 III-49〉 전반적 특성에 따른 피해아동 최종조치 수준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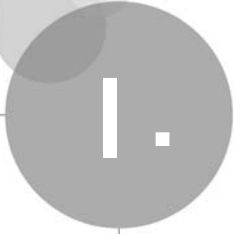
목차

아동학대 사례 분석연구 Ⅱ.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표 Ⅲ-50〉 학대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최종조치 수준	72
〈표 Ⅲ-51〉 전반적 특성에 따른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 수준	74
〈표 Ⅲ-52〉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 수준	76
〈표 Ⅲ-53〉 전반적 특성에 따른 시설 최종조치 수준	77
〈표 Ⅲ-54〉 학대유형에 따른 시설 최종조치 수준	79
〈표 Ⅲ-55〉 판정관련 증거에 따른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비교	82
〈표 Ⅲ-56〉 판정관련 증거에 따른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83
〈표 Ⅲ-57〉 판정관련 증거에 따른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85
〈표 Ⅲ-58〉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87
〈표 Ⅲ-59〉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88
〈표 Ⅲ-60〉 학대유형에 따른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89
〈표 Ⅲ-61〉 판정관련 증거에 따른 아동 최종조치 수준	90
〈표 Ⅲ-62〉 판정관련 증거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수준	92
〈표 Ⅲ-63〉 판정증거에 따른 시설 최종조치 수준	93

그림 목차

〈그림 Ⅱ-1〉 연구대상 사례 선정 과정	10
〈그림 Ⅱ-2〉 코딩시스템 구축 과정	12
〈그림 Ⅲ-1〉 시설 아동학대의 사례 조치 및 미조치 결과	96



서론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 Ⅱ.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의 2013 아동복지시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전국에는 총 281개의 아동복지시설에 15,916명의 보호아동이 있다고 한다(보건복지부, 2013b). 이들 중 92.4%의 아동들은 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나머지 아동은 보호치료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 개인양육시설 등에서 지내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볼 때, 보호 아동 중 남아의 비율은 57.1%로 여아보다 약간 많으며, 연령은 0세에서 대학재학까지 다양한데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총 17.6%로 취학연령이 월등히 많고 30.4%가 초등학생, 24.1%가 중학생, 19.9%가 고등학생의 분포를 보인다고 한다.

아동복지와 관련한 시설은 아동,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직접 아동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일선 기관들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종합시설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들은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 치료, 상담, 예방, 건전육성 등을 목표로 최일선에서 한 사회의 아동복지사업을 실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일련의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시설의 아동학대 사례들은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피해아동들에게 가해진 폭력의 잔인성은 말할 것도 없고,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충격은 컸다. 더욱이 아동복지시설, 특히 생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부모가 없거나 주양육자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폭력과 착취에 취약한 아동인 경우가 많아 시설 아동학대는 더 큰 사회적 반향과 공분을 일으켰다.

시설 내 보호아동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해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 아동학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몇 가지 이유로 쉽지 않다. 먼저,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신고율이 저조하여 극히 일부 사례만이 담당기관에 신고되기 때문이다. 시설 아

동들은 어린이집 아동들보다 연령이 높아 스스로 학대를 자각하고 신고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호자가 없고 시설과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건을 외부로 노출하는 게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실령 아동학대가 신고된다 하더라도 어떤 행위가 학대행위이며 어떤 것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전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반면 시설 아동학대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매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행하는데 보고서가 제공하는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사태에 관한 통계치 외에 관련 통계도 찾기 어렵다. 가장 최근의 통계인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한 사례 중 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는 총 229건이고 이중 보육교직원이나 기타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총 99건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5%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설 아동학대에 대한 신뢰성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입력한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 자료에 한정되어 있다. 위에 언급된 이유들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자료가 실제 시설 아동학대를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는 학대날짜, 아동 및 가해자 특성, 그리고 구체적인 학대 행위 및 정황, 학대로 인한 결과, 학대판정 여부 및 이유,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치여부 및 내용 등 학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담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최근 2010년-2012년 3년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조사를 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시설 아동학대의 현황과 아동학대 사례의 특성을 파악하여 시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학대가 발생한 경우 시설 아동학대에 대해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정책과 시스템 개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조사를 실시한 사례 중 각종 시설에서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총 7,406건, 2011년 8,325건, 2012년 8,979건의 아

동학대에 대해 학대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각각 36개, 23개, 31개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본 연구에서의 시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과 미인가 시설 등의 기타시설을 포함하여 시설 종사자에 의해 아동에게 가해진 학대”로 정의하였다. 또한 해당사례들을 바탕으로 아동 및 학대행위자 특성, 구체적인 학대 행위 및 정황, 학대로 인한 결과, 학대판정 여부 및 이유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치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대판정이 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으며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구분하는 판정여부와 시설 고소 고발, 시설장 변경, 시설 폐쇄 등의 최종조치 여부 및 유형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2010년-2012년 3년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시설아동학대의 현황을 파악한다.
2.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시설 아동학대의 특성을 파악한다.
3. 학대 판정 유형과 최종조치 유형에 따라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시설 아동학대 특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2 시설 아동학대 분석을 위한 코딩시스템 구축
- 3 코딩시스템에 포함된 시설 아동학대 관련 변수
- 4 코딩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 Ⅱ.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아동학대의심 사례로 신고·접수된 시설은 165개의 시설(해당 아동 수 586명)로, 이들 시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중 90개의 시설에서 369명의 아동이 시설종사자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본 연구는 시설 아동학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되어 학대사례로 판정한 시설 아동학대사례 90개 전수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시설 아동학대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비교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학대판정에 따른 사례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설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었으나 잠재위험사례나 일반사례로 판정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근 3년간의 학대사례 90개(피해아동 369명)와 함께 잠재위험사례 17개(피해아동 73명), 일반사례 58개(피해아동 144명) 전수를 포함하여 총 165개 시설에서의 586명 아동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표 II-1〉 최근 3년간 시설 아동학대 판정사례 유형별 시설 수

(단위: 개, %)

판정사례 유형	시설 개수 (아동 수)	백분율
학대사례	90 (369명)	54.5
잠재위험 사례	17 (73명)	10.3
일반사례	58 (144명)	35.2
계	165 (586명)	100.0

특히, 본 연구는 시설 아동학대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학대가 발생한 장소를 시설로 국한하였고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학대로 제한하였다. 최근 3년간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한 사례는 2010년에는 127건, 2011년엔 111건, 2012년엔 119건이었다. 이들 사례를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했던 학대사례로 제한할 경우 2010년엔 36개 시설에서 173명의 아동이, 2011년엔 22개 시설에서 97명의 아동이, 2012년엔 32개 시설에서 99명의 아동이 시설 내에서 시설종사자에 의해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후 학대로 판정한 이들 90개 시설 전수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대상 사례의 선정 과정은 다음의 <그림 II-1>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II-1> 연구대상 사례 선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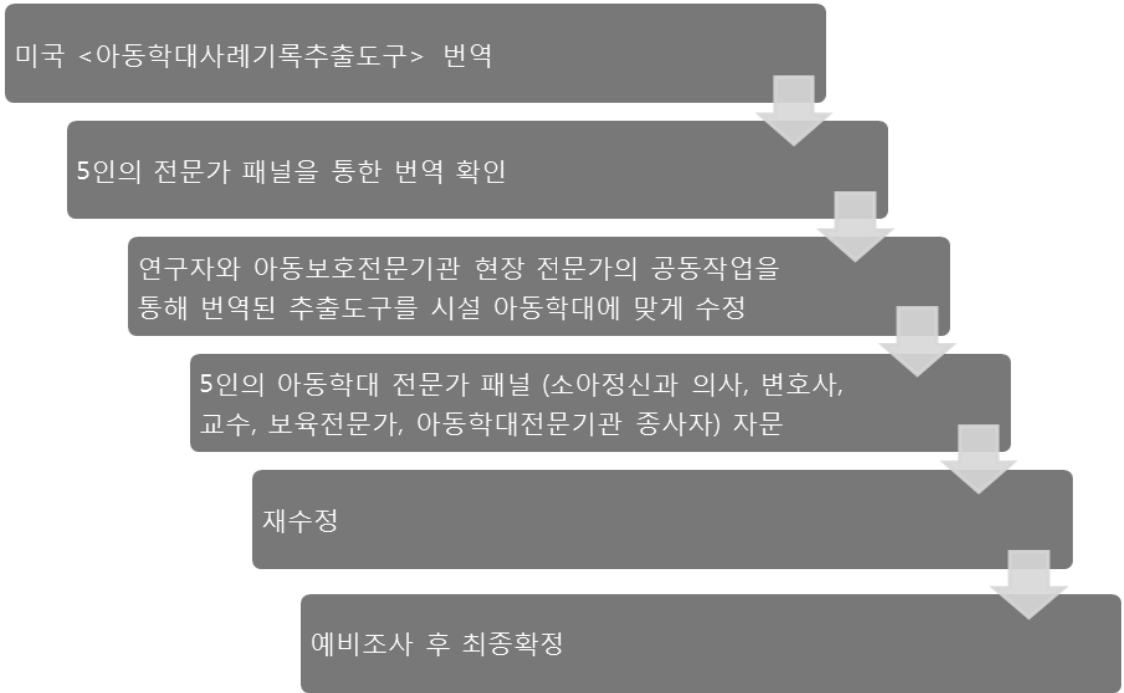
2. 시설 아동학대 분석을 위한 코딩시스템 구축

시설 아동학대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체 코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코딩 시스템은 미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시스템 내 학대 기록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아동학대 사례기록 추출 도구〉(Maltreatment Case Record Abstraction Instrument [MCRAI], Trickett, Mennen, Kim, & Sang, 2009; Mennen, Trickett, Kim, & Sang, 2010)를 바탕으로 번역하였고, 시설 아동학대 특성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한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듬는 과정을 통해 개발하였다.

MCRAI는 Barnett, Manly, & Cichetti (1993)가 연방정부 연구비를 받은 대규모 아동학대 중단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한 아동학대분류시스템-수정본 (Modified Maltreatment Classification System, [MMCS])을 기본으로 많은 아동학대연구자들과 미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기록을 세부사항까지 추출하여 아동들의 학대경험을 자세히 계량화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MCRAI의 기본적 구조는 학대를 범주와 하위범주, 그 하위범주로 계속 나누어 나아가도록 되어있고 이외에도 학대행위자, 빈도, 지속기간, 행위의 결과 등 학대와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기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MCRAI를 바탕으로 국내 시설 아동학대에 맞는 코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한 전문가 패널과 아동학대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는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소아정신과 의사, 변호사, 사회복지학 교수, 보육전문가, 아동학대 전문기관 중간 관리자)을 구성하였다. MCRAI를 미국 아동학대 연구에서 직접 사용해본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본 연구의 책임연구자가 MCRAI를 번역한 후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을 통해 번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하였다. 이후 책임 연구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전문가의 공동작업을 통해 번역된 도구를 한국 시설 아동학대에 맞게 수정하였다. 수정과정에서 시설의 맥락에 맞지 않는 항목들(교육방임)을 제거하였고 필요한 항목들(최종조치 중 고소고발 여부, 학대행위자 유형 중 시설종사자 등)을 추가하였다. 수정을 바탕으로 5인의 아동학대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코딩 시스템을 검토하였고 자문을 받아 재수정 작업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시설 아동학대 사례 중 무작위로 추출된 20여 사례에 대해 코딩시스템을 적용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코딩시스템을 확정지었다. 코딩시스템 개발 과정은 다음의 그림 <II-2>에 요약하였다.



<그림 II-2> 코딩시스템 구축 과정

3. 코딩시스템에 포함된 시설 아동학대 관련 변수

코딩시스템을 통해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 사례들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정보는 <표 II-4>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II-2> 코딩시스템에 포함된 시설 아동학대 관련 변수

	구 분	내 용
학대판정	학대여부	학대, 잠재위험, 일반
아동특성	성별	남/여
	나이	나이
	장애 유무	장애 없음/신체장애/정신(지적)장애
	피해아동 수	판정유형별 아동 수
학대행위자 특성	성별	남/여
	나이	나이
	학대행위자 수	학대행위자 수
	아동과의 관계	시설장, 생활지도원, 시설종사자, 기타
시설 특성	시설 종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기타
학대 특성	신고자 유형	피해아동 본인, 피해아동 부모,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및 기타 공무원,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 및 시설 후원자, 학교 교직원 및 상담사, 시설 내 타 아동 및 부모, 피해아동 주변인(이웃, 이모), 행인 및 낯선 사람, 기타(의료인, 실습생, 과거 시설생활자)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신체학대	구체적 행위, 신체 손상여부, 도구사용여부, 사용된 도구의 종류
	성학대	구체적 행위
	정서학대	구체적 행위
	방임	구체적 행위
	학대발생 빈도	1회, 2회 이상(간혹, 자주)
	학대발생 기간	1일, 2일 이상(2일, 장기간)

〈표 II-2〉 코딩시스템에 포함된 시설 아동학대 관련 변수 (계속)

구 분		내 용
	최종조치	유무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치료, 상담 및 서비스(법률자문) - 원가정 복귀 - 가정위탁 및 시설, 친인척 일시보호, 격리조치 - 전원조치 - 멘토링 및 지원방안 안내 서비스 - 지속관찰 및 모니터링
최종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고발 - 해임 또는 전근 - 징계 및 감봉, 벌금 - 상담 및 교육, 치료프로그램 실시 - 경고 및 주의조치 - 지속관찰 및 모니터링 - 자진사퇴(사직)
	시설에 대한 최종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폐쇄 - 시설장 교체 및 각서 - 시설점검 및 전수조사 - 관할지자체 의뢰 및 시에 결과 통보, 운영 일시정지 - 경고 및 주의조치 - 모니터링 - 종사자 상담 및 서약서 작성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자진폐쇄

4. 코딩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아동학대사례 기록을 바탕으로 구축하였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시설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와 신고내용, 현장조사내용, 상담원 소견, 최종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평균 2-3페이지 분량의 사례 개요서를 작성하였고 이 개요서를 바탕으로 집중적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 전공 대학원생 3명이 개발된 코딩시스템을 따라 시설 아동학대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찾아 비교·대조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최대한 결측치가 없도록 노력하였다.



연구결과

- 1 연도별 신고, 조사 및 학대판정
- 2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 3 학대행위자의 인구학적 특성
- 4 시설 특성 및 유형
- 5 시설 아동학대의 특성
- 6 아동학대사례 최종조치 결과
- 7 학대 판정유형에 따른 비교
- 8 최종조치 결과에 따른 비교
- 9 판정관련 증거에 따른 판정유형별 비교
- 10 시설 아동학대사례 조치 및 미조치 결과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 Ⅱ.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시설을 단위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세부항목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학대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잠재위험사례 및 일반사례를 학대판정사례와 비교·대조하였고, 주요 항목에 대해 교차분석 및 카이검정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신고, 조사 및 학대판정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접수된 이후, 학대 사례로 판정한 시설은 90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가 신고·접수되었던 전체 165개 시설의 54.5%에 해당하는 수치로써, 학대의심으로 신고·접수된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사례판정이 진행되었던 시설 2곳 중 1곳에서 학대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1) 판정유형별 사례 수

시설 내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접수되었던 165개의 시설들 중 2010년엔 36개의 시설에서, 2011년엔 22개의 시설에서, 2012년엔 32개의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당해 연도의 학대 판정율은 66.7%, 55%, 44.4%로 나타나, 2010년부터 2012년도 사이에는 학대판정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시설에서의 학대판정율은 평균 54.5%로, 현장조사가 진행된 시설 2곳 중 1곳은 학대가 발생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 판정유형별 사례 수

(단위: 개)

판정유형	2010	2011	2012	합 계
학대사례	36	22	32	90
잠재위험사례	3	7	7	17
일반사례	15	11	33	58
학대 판정율(%)	66.7	55.0	44.4	54.5
합 계	54	40	72	165

2) 판정유형별 시설 수 대비 판정 아동 수

시설 수와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설 수 대비 학대판정 아동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3년간 학대로 의심되어 신고·접수된 시설에서의 사례 중 90개(54.5%)의 시설을 학대사례로, 17개(10.3%)의 시설을 잠재위험사례로, 58개(35.2%)의 시설을 일반사례로 판정하였다. 각각의 판정사례 유형별 해당 아동은 각각 369명(62.9%), 73명(12.5%), 144명(24.6%)으로 나타나, 잠재위험사례나 일반사례로 판정한 아동들보다 학대사례로 판정한 아동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수 대비 해당 아동 수는 학대사례의 경우 평균 4.10명,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평균 4.29명, 일반사례의 경우 평균 2.48명으로 보고되어, 일반사례가 학대사례나 잠재위험사례보다 시설 수 대비 해당 아동 수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판정유형별 시설 수 대비 판정 아동 수

(단위: 개, 명)

판정유형	빈 도		시설 수 대비 판정 아동 수
	시설 수(%)	아동 수(%)	
학대사례	90(54.5)	369(62.9)	4.10
잠재위험사례	17(10.3)	73(12.5)	4.29
일반사례	58(35.2)	144(24.6)	2.48
합 계	165(100)	586(100)	3.55

3) 지역별 분포

학대를 판정받은 전체 90개의 시설 중 27개의 시설이 경기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판정 시설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상북도(10%), 강원도(7.8%) 순으로 학대판정을 받은 시설이 많이 분포하였다.

2012년 아동복지시설 통계(보건복지부, 2013a)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의 아동복지 시설과 공동생활가정 153개 중 27개(17.6%)의 시설이, 경상북도 지역의 26개 시설 중 10개(38.5%)의 시설이, 강원도 지역의 33개 시설 중 7개(21.2%)의 시설이 학대판정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대판정을 받은 시설의 수는 경기도가 가장 높았으나, 각 지역의 전체 수 대비 학대가 발생한 시설의 비율을 보면, 경상북도 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 지역별 분포

(단위: 개, %)

지 역	빈 도	백분율
서 울	2	2.2
부 산	3	3.3
대 구	5	5.6
인 천	4	4.4
광 주	3	3.3
대 전	2	2.2
울 산	1	1.1
경 기 도	27	30.0
강 원 도	7	7.8
충 북	5	5.6
충 남	2	2.2
전 북	6	6.7
전 남	6	6.7
경 북	9	10.0
경 남	5	5.6
제 주	3	3.3
합 계	90	100.0

2.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학대사례로 판정한 90개의 시설로부터 총 369명의 아동이 학대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시설을 단위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90개의 시설에서 학대 판정을 받은 전체 369명의 아동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 역시 함께 제시하였다. 시설 단위별 분석을 위해서 각 시설에서 학대 수준이 높은 아동¹⁾ 1명을 선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아동 성별

90개의 시설에서 학대로 판정한 369명의 아동들 중 남아가 226명(61.2%), 여아가 143명(38.8%)으로 나타나 시설에서는 여아에 비해 남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학대에 노출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설을 분석단위로 하여, 각 시설에서 학대수준이 높은 아동을 선별하여 이들 90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남아는 54명(60%), 여아는 36명(40%)으로 나타났다.

전체 369명의 아동들 중에서 남아가 차지하는 비율(61.2%)과 시설 단위별 학대 수준이 높은 아동들 중의 남아 비율은 모두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여아보다 남아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학대의 수준 역시 여아보다는 남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에서 보다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아동 성별

(단위: 명, %)

성 별	학대판정 전체 아동		시설 단위별 아동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남 아	226	61.2	54	60.0
여 아	143	38.8	36	40.0
합 계	369	100.0	90	100.0

1) 각 시설에서 학대수준이 높은 아동은 폭력수준이 가장 심하거나 학대의 빈도가 높거나 학대의 여러 유형을 중복으로 경험하거나 나이가 낮은 아동들에 초점을 두어 해당 아동들을 선별하였고, 학대수준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 무작위로 1명의 아동을 선별하였다.

2) 아동 연령

시설에서 학대 판정을 받은 369명의 아동을 분석한 결과, 시설 학대판정 아동의 평균 연령은 12.16세였고 피해아동의 연령은 2세부터 19세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세부터 14세 연령의 아동이 각각 10%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아동들은 전체의 46.8%로 과반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세-19세의 전체 피해아동 중 11세-14세의 해당 연령 아동들이 학대 상황에 상대적으로 더욱 많이 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0개의 시설에서 학대를 경험한 396명의 아동 중 시설별 학대수준이 높은 아동 1명씩을 선별하여 이들 아동을 분석한 결과, 14세 14.4%와 16세 14.4%인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2세 11.1%와 17세 11.1%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대 수준이 높은 아동의 평균 나이는 12.79세로 나타나, 학대수준이 높은 아동의 평균연령이 학대판정을 받았던 전체 369명의 아동들의 평균연령인 12.16세에 비해 0.61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학대의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대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5〉 아동 연령

(단위: 명, %)

연 령(세)	학대판정 전체 아동		시설 단위별 아동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2	2	0.5	—	—
3	2	0.5	—	—
4	3	0.8	—	—
5	5	1.4	2	2.2
6	8	2.2	2	2.2
7	12	3.3	4	4.4
8	20	5.4	6	6.7
9	24	6.5	3	3.3
10	25	6.8	7	7.8
11	41	11.1	4	4.4

12	47	12.7	10	11.1
13	41	11.1	7	7.8
14	44	11.9	13	14.4
15	35	9.5	7	7.8
16	34	9.2	13	14.4
17	19	5.1	10	11.1
18	6	1.6	2	2.2
19	1	0.3	90	100.0
합 계	369	100.0	90	100.0
평균 (표준편차)		12.16세 (3.243)		12.79세 (3.387)

3) 아동 장애유무

학대판정을 받은 90개 시설에서의 369명의 아동 중 신체장애가 있는 아동은 3명(0.8%), 정신(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은 17명(4.6%)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학대수준이 높은 아동을 선별하여 이들 90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신체장애가 있는 아동이 2명, 정신(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이 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를 판정받은 90개 시설의 2.2%, 8.9%에 해당한다.

〈표 III-6〉 아동 장애유무

(단위: 명, %)

장애유무	학대판정 전체 아동		시설 단위별 아동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장애 없음	349	94.6	80	88.9
신체장애	3	0.8	2	2.2
정신(지적) 장애	17	4.6	8	8.9
합 계	369	100.0	90	100.0

3. 학대행위자의 인구학적 특성

아동학대로 판정된 90개 시설에서의 학대행위자는 총 114명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1개의 시설에서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를 포함한 수치이다. 학대행위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이들 114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1) 학대행위자 성별

학대행위자 114명 중 성별이 파악 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13명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61명(53.5%), 남성이 52명(45.6%)으로 나타났다. 두 성별 간의 비율에서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7〉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성 별	빈 도	백분율
남 자	52	45.6
여 자	61	53.5
파악 안 됨	1	0.9
합 계	114	100.0

2) 학대행위자 연령

114명의 학대행위자 중 연령이 파악되지 않는 7명을 제외한 107명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I-8〉에 제시되었다. 학대행위자의 평균 연령은 42.82세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40대와 50대에서 각각 24.6%로 나타나, 학대행위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41-60세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40세는 25명(21.9%), 21-30세는 22명(19.3%)으로 나타나, 연령이 21-40세 사이에 해당하는 행위자도 전체 행위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8〉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명, %)

연 령(세)	빈 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21-30	22	19.3	
31-40	25	21.9	
41-50	28	24.6	
51-60	28	24.6	42.82세
61-70	3	2.6	(11.974)
71-80	0	0.0	
81-90	1	0.9	
파악 안 됨	7	6.1	
합 계	114	100.0	

3)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간의 관계

학대로 판정받은 90개의 시설에서 아동에게 학대를 행했던 행위자는 대부분 시설장이거나, 생활지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14명의 학대행위자 중 생활지도원이 59명(51.8%), 시설장이 32명(28.1%)로 보고되었다. 그 외 학대행위자는 시설종사자가 18명(15.8%)으로 기타가 5명(4.4%)으로 보고되었다. 기타 항목에는 이사장이 2명, 자원봉사자가 2명, 폐쇄된 장애인 시설장 1명이 포함되어 있다.

〈표 III-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간의 관계

(단위: 명, %)

학대행위자	빈 도	백분율
시설장	32	28.1
생활지도원	59	51.8
시설종사자	18	15.8
기 타	5	4.4
합 계	114	100.0

4. 시설 유형 및 특성

학대사례로 판정된 90개 시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1) 시설 유형

학대사례로 판정된 90개 시설의 유형은 아동양육시설이 53개(58.9%), 공동생활가정이 19개(21.1%), 일시보호시설이 5개(5.6%), 기타유형의 시설이 13개(14.4%)로 나타났다. 즉, 학대사례로 판정받은 시설의 과반수 이상(58.9%)이 아동양육시설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2012년 말 기준의 보건복지부 자료는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현황을 통해 전국에 분포하는 시설의 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개인양육시설을 포함한 아동양육시설은 277개, 공동생활가정은 489개, 일시보호시설은 12개로 확인하였다. 2012년도의 전국 시설 수 대비 학대판정비율은, 아동양육시설은 6.9%(277개 시설 중 19개 시설), 공동생활가정은 2%(489개 시설 중 10개 시설), 일시보호시설은 8.3%(12개 시설 중 1개 시설)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12년의 전국에 분포한 시설 수 대비 학대판정비율은 일시보호시설(8.3%)에서 가장 높고, 아동양육시설(6.9%), 공동생활가정(2%) 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0〉 시설 유형

(빈도: 개, %)

시설 유형	2010	2011	2012	합 계
아동양육시설	22	12	19	53(58.9)
공동생활가정	2	7	10	19(21.1)
일시보호시설	3	1	1	5(5.6)
기 타	9	2	2	13(14.4)
합 계	36	22	32	90(100.0)

5. 시설 아동학대의 특성

학대사례로 판정된 90개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자 유형

학대사례로 판정받은 90개의 시설에 대해 학대를 의심하며 신고·접수한 신고자들의 유형은 <표 Ⅲ-11>에 제시하였다. 피해아동이나 피해아동의 부모가 직접 신고한 시설은 각각 2개(2.2%)의 시설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공무원이 신고한 시설은 21개(23.4%) 시설로 나타났고, 시설종사자가 신고한 시설은 17개(18.9%) 시설, 학교 교직원 및 상담자가 신고한 시설은 9개(10%) 시설, 의료인 1개(1.1%) 시설로 나타났다.

<표 Ⅲ-11> 신고자 유형

(단위: 개, %)

신고자 유형	빈도	백분율
피해아동 본인 ²	2	2.2
피해아동 부모 ²	2	2.2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²	22	24.5
사회복지 및 기타 공무원 ¹	21	23.4
시설종사자 ¹	17	18.9
자원봉사자 및 시설 후원자 ²	6	6.7
학교 교직원 및 상담사 ¹	9	10.0
시설 내 타 아동 및 부모 ²	3	3.3
피해아동 주변인(이웃, 이모) ²	3	3.3
행인 및 낯선 사람 ²	2	2.2
기타(의료인 ¹ , 실습생 ² , 과거 시설생활 경험자 ²)	3	3.3
합계	90	100.0

※ ¹ : 신고의무자, ² : 비신고의무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과반수이상(13명)을 차지하며, We 클래스 복지사, 시설실태조사 중 신고 등이 해당하였다.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 및

시설 후원자가 신고한 시설이 6개(6.7%) 시설, 시설 내 타 아동이나 타 아동의 부모가 신고한 시설이 3개(3.3%) 시설, 피해아동의 주변인(이웃이나 이모)이 신고한 시설이 3개(3.3%) 시설로 나타났으며, 행인 및 낯선 사람, 실습생, 과거 시설생활 경험자가 신고한 시설도 각각 1개 시설로 보고되었다. 신고자 전체 중 신고의무자는 77.9%로 나타나, 시설 아동학대의 경우 많은 신고의무자들이 학대의심사례를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설 아동학대 유형별 분포

(1) 아동학대 유형별 분포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학대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학대를 판정받은 90개의 시설 중에서 54개(60%)의 시설에서 중복학대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로 판정받은 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학대유형은 중복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정서학대와 신체학대가 발생했던 시설이 각각 11개(12.2%) 시설, 10개(11.1%) 시설로 그 뒤를 이었다. 성학대를 판정받은 시설은 8개(8.9%) 시설, 방임을 판정받은 시설은 7개(7.8%) 시설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대를 판정받은 시설 대부분에서 단일 학대유형 보다는 2개 이상의 학대유형이 중복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 아동학대 유형별 분포

(단위: 개, %)

아동학대 유형	빈 도	백분율
신체학대	10	11.1
정서학대	11	12.2
성학대	8	8.9
방임	7	7.8
중복학대	54	60.0
합 계	90	100.0

(2) 중복학대 유형별 분포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유형 중 중복학대 유형은 과반수이상(60%)을 차지하는데, 중복학대의 세부적인 학대유형은 <표 III-13>에 제시되었다. 중복학대 유형 중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함께 발생한 유형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이 유형은 중복학대가 발생한 54개의 시설 중에서 45개로 나타나, 중복학대가 발생한 시설 전체의 83.3%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방임, 이 세 가지 학대 유형이 함께 발생한 시설이 4곳(7.4%), 정서학대와 방임이 함께 발생한 중복학대 유형이 3곳(5.6%), 신체학대와 방임이 함께 발생한 중복학대 유형이 1곳(1.9%),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그리고 성학대, 이 세 가지 학대유형이 함께 발생한 중복학대 유형이 1곳(1.9%)의 시설에서 발생하였다.

<표 III-13> 중복학대 유형별 분포

(단위: 개, %)

중복학대 유형	빈 도	백분율
신체+정서	45	83.3
신체+방임	1	1.9
정서+방임	3	5.6
신체+정서+성	1	1.9
신체+정서+방임	4	7.4
합 계	54	100.0

3) 시설 학대유형별 특성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학대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설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학대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학대 행위를 이미 정해진 몇몇의 행위 유형에 따라 범주화하여 기술하였다. 한 개의 시설에서 이 유형화된 학대 행위가 중복으로 발생했을 때는 중복으로 체크하여, 시설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학대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학대 특성

① 신체학대 유형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학대사례로 판정된 시설에서의 신체학대는 아동을 흔들거나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 손이나 손바닥으로 아동의 신체를 꼬집거나 때리는 행위, 아동을 발로 차거나 때리는 행위, 도구를 이용해 아동을 때리는 행위, 아동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그 외의 기타 행위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7세 아동이 반항했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쳐 침대에 부딪히게 하고 목을 두 차례 조르는 행위를 포함한 잡아당기기와 밀치기의 신체학대 행위는 90개의 시설 중 12개(10.6%)의 시설에서 발생하였다. 아동이 시설의 언니들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행위자가 욕을 하고 뺨을 15대를 때리거나, 행위자의 말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뒤통수를 세게 때리거나,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얼굴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신체학대는 44개(38.9%)의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양한 신체학대 행위 중에서 손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꼬집거나 할퀴기 등과 같은 행위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가 술을 마시고, 15세의 남아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과격한 폭력은 19개(16.8%)의 시설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야구방망이, 경찰봉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폭력이 발생했던 시설도 36개(31.9%)로 나타났으며, 위협을 가했던 신체학대는 1개(0.9%)의 시설, 아동의 성기를 도구를 이용해 위협하거나, 때리는 등의 위협을 가한 기타에 해당하는 신체학대 사례 역시 1개의 시설(0.9%)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신체학대 유형 (중복포함)

(단위: 개, %)

신체학대 유형 ²⁾	시설 신체학대 사례 예시	빈도	백분율
흔들기/잡아당기기/ 밀치기/물기/목조르기	17세 아동이 반항했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쳐 침대에 부딪히게 하고 목을 2차례 졸랐다고 함	12	10.6
손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기/꼬집기/할퀴기	17세 여아가 시설 내 언니들한테 대든다는 이유로 행위자가 욕을 하고 뺨을 15대 정도 때렸다고 함 청소하라는 말에 응하지 않은 16세 남아를 행위자가 벌 세우고 뒤통수를 세게 때렸으며, 컴퓨터 게임 파일 다운 받았단 이유로 머리채 끌어당기고 얼굴 때려 멍이 들게 함	44	38.9
발로 차기/때리기	행위자가 술을 마시고 보육원에 들어와 15세 남아를 주먹과 발로 때렸고, 머리를 박으라고 한 뒤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고 함, 이로 인해 아동은 3일간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함	19	16.8
도구로 때리기	15세 남아가 새벽에 무단이탈 하였던 이유로 옥상에서 엎드려 박기를 시킨 후 발로 참,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운동장 10바퀴, 야구 방망이로 5대 때려 척추분리증 진단 받았다고 함 13세 남아가 밤에 떠들어서 경찰봉처럼 생긴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고 장난치는 아동을 불러 발로 아동의 췌대뼈를 차고 아동의 왼쪽 뺨을 때렸음	36	31.9
물건 던지기	15세 남아가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다리를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쥐어박는데 한 번은 아동의 머리에 의자를 던져 피가 났고 머리를 꺾었다고 함	1	0.9
기 타	도래간 성폭행 경험이 있는 16세 남아가 자위행위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에게 피해아동을 잡게 한 후 성기를 5~6대 가량 때리거나 가위로 성기를 찢기도 하여 며칠 동안 성기에 붕대를 감고 다니게 했다고 함	1	0.9
합 계		113	100.0

2) 신체학대의 행위는 보통 물건(재떨이, 책, 그릇) 등을 던지는 행위,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두들겨 패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거나 발로 차는 행위, 꼬집거나 차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빗자루/옷걸이/몽둥이/허리띠 등 도구를 가

② 신체학대 도구 사용여부

학대판정을 받은 전체 90개의 시설 중 신체학대가 발생한 시설은 단일 유형으로써의 신체학대와 중복학대 중 신체학대가 관련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모두 61개 시설에서였다. 이들 중 행위자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아동에게 신체적 행위를 가한 시설은 28개 시설(45.9%)에서였으며, 행위자가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의 신체에 해를 가한 시설은 33개(54.1%) 시설에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학대가 발생했던 시설의 과반수이상에서 행위자가 사용한 도구에 의해 아동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표 III-15〉 신체학대 도구 사용여부

(단위: 개, %)

도구 사용여부	빈 도	백분율
도구사용 없음	28	45.9
도구사용 함	33	54.1
합 계	61	100.0

③ 신체학대 사용도구 종류

신체학대 행위에 사용한 도구로는 쇠파이프, 방망이, 회초리, 빗자루, 파리채, 단소, 냄비뚜껑, 신발 등 그 종류가 다양했으며, 기다란 모양 등의 막대기 형태 도구가 신체학대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들 중 몽둥이, 막대기, 회초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신체학대 행위가 발생했던 시설은 도구 사용 신체학대가 발생했던 전체 33개의 시설 중에서 15개 시설로 나타나, 전체 시설의 43.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 이 행위자들이 신체학대를 위해 쓴 구체적인 도구의 구성은 〈표 III-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고 때리는 행위, 담뱃불/다리미로 지지거나 꼬챙이/칼 등 흉기로 위협하거나 찌르는 행위, 뜨거운 불이나 불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으로 나눌 수 있다(김성경·김혜영·최현미,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체학대의 세부행위 및 실제로 시설에서 발생하였던 신체학대 행위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의 6가지 유형으로 신체학대 세부행위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III-16〉 신체학대 사용도구 종류

(단위: 개, %)

도구 종류	빈 도	백분율
쇠파이프(쇠봉)	3	9.3
몽둥이(방망이), 막대기, 회초리	15	43.8
빗자루, 효자손, 파리채	6	18.8
단소, 당구 채	2	6.2
의자, 냄비뚜껑, 신발, 편지봉투 ³⁾ , 과일박스	7	21.9
합 계	33	100.0

④ 신체학대로 인한 손상

신체학대 행위가 발생했던 시설들 중 해당아동이 신체학대로 인해 상처나 멍이 들었던 것은 신체학대를 경험했던 61개의 시설들 중 26개의 시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신체학대로 인한 손상

(단위: 개, %)

손상 유형	빈 도	백분율
손상 없음	35	57.4
상처나 멍이 들	26	42.6
합 계	61	100.0

(2) 성학대 특성

성학대가 발생한 시설에서 행위자가 아동에게 키스를 했던 행위는 3개의 시설(25%)에서 발생하였는데, 구체적인 행위로는 10세 여아가 행위자를 부축하여 이사장실로 데려다 주자 아동의 몸을 만지고 키스를 했던 행위를 들 수 있다.

3) 해당 편지봉투는 두께가 잡지수준으로 두꺼웠으며, 이것으로 때려서 아동의 입에서 피가 났다고 한다.

〈표 III-18〉 성학대 유형 (중복포함)

(단위: 개, %)

성학대 유형 ⁴⁾	시설 성학대판정 사례 예시	빈도	백분율
아동에게 키스를 함	건강이 좋지 않은 행위자를 10세 여아가 부축하여 이사장실로 데려다주자 행위자는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한 번 안아달라고 하여 아동이 안아주자 아동의 등과 엉덩이 쓰다듬고 아동에게 키스를 하였는데, 입 안으로 혀를 살짝 넣었다고 함	3	25.0
아동의 생식기나 가슴, 그 외의 몸을 만짐	학대노출 당시 11살이던 여아는 4살 때부터 행위자가 아동을 예뻐서 쓰다듬어 주고 만져준다고 생각했다고 함, 행위자가 사택으로 불러 아동 가슴 및 성기를 만졌다고 하는데, 아동이 싫다고 거부 의사 표현해도 행위자가 소리 지르면서 만졌다고 함	7	58.4
기타	16세 여아의 가슴을 만지며 양쪽 가슴크기를 비교하거나 다른 아동과의 가슴크기를 비교하는 말을 행위자가 하였다고 함	2	16.6
합계		12	100.0

아동의 생식기나 가슴, 그 외의 몸을 만졌던 성학대 행위는 7개의 시설(58.4%)에서 발생하였는데, 11살인 여아가 4살 때부터 행위자가 가슴 및 성기를 만졌다고 보고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성학대 행위 유형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세 여아의 가슴을 행위자가 만지며 양쪽 가슴크기를 비교하거나 다른 아동과의 가슴크기를 비교한 행위는 2개(16.6%)의 시설에서 보고하였다.

(3) 정서학대 특성

정서학대는 APSAC(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and Children)

4) 성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게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기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포르노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아동 매춘이나 성매매를 하는 행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김선경 외,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성학대 행위와 실제로 시설에서 발생한 성학대 행위를 토대로 세부 행위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유형화에 따라 거부 또는 경멸의 행위,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고립시키는 행위, 착취 및 타락시키는 행위로 나눌 수 있다(Trickett, Mennen, Kim and Sang, 2009). 시설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거부 또는 경멸의 행위가 정서학대 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15세 여아의 부모 욕을 하며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는 행위가 일어난 시설이 30개(34.1%)의 시설로 정서학대 행위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5세 여아에게 망나니 같다며 정신병원에 가라는 등의 언어폭력을 행한 정서학대 행위 등도 20개의 시설(22.7%)에서 발생했으며, 아동들에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 시설은 21개(23.9%) 시설에서 발생하였다. 시설 내 종사자와 시설장 간의 갈등으로 인해 아동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했던 정서학대 행위는 8개(9.1%) 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어린 아동이 건강해져야 한다며 10km를 걷게 시키는 등의 비현실적인 것들을 강요한 시설도 5개(5.7%)에서 나타났다. 아동을 가두어 놓거나 버리겠다고 위협한 시설은 각각 2개(2.3%) 시설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정서학대 유형 (중복포함)

(단위: 개, %)

APSAC ⁵⁾ 의 정서학대 유형	연구에서 사용된 코딩시스템 항목	시설 정서학대 사례의 예	빈도	%
거부 또는 경멸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함”	15세 여아의 부모 욕을 하며, 다른 아동들이 봤을 때도 유독 행위자가 해당 아동을 엄격하게 대하며 차별했다고 함	30	34.1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함”	15세 여아에게 ‘망나니 같다’, ‘널 보고 뭘 배우겠니’, ‘정신병원에나 가라’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함	20	22.7
공포감 조성	“공포분위기를 조성함”	아동들이 잘못하면 행위자가 욕하고 소리 지르거나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함	21	23.9
	“아동을 내쫓거나 버리겠다고 위협함”	13세 남아에게 행위자가 ‘네 마음대로 할 거면 좃대로 해라. 여기서 살지 말고 나가서 살아라’ 라고 했다고 함	2	2.3

	“아동에게 시설 직원 간 싸움 장면을 노출시킴”	—		
	“아동이 시설에서 발생한 폭력 (시설 직원 간 싸움 외)에 노출되었음”	시설장과 종사자 간의 갈등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면서 12세 남아의 심리적 불안감이 조성되었다고 함	8	9.1
고립 시키기	“아동을 가두어놓음”	13세 남아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오후 8시부터 12시 30분까지 방 안에 가두고 무릎을 꿇게 하였음	2	2.3
차취 및 타락 시키기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함”	어린 아동이 건강해져야 한다는 이유로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발이 아픈 상태에서도 강제로 10km 길을 걸어서 등하교 하게 함	5	5.7
합 계			88	100.0

(4) 방임 특성

방임은 Knutson et al.(2005)의 방임 유형을 토대로 학대행위를 유형화하였다(Mennen, Trickett, Kim and Sang, 2010). 이 유형에 따르면, 방임은 돌봄방임, 의료방임, 감독방임으로 유형화되며 돌봄방임은 다시 돌봄방임과 환경방임으로 유형화된다.

방임판정을 받은 시설을 분석한 결과, 아동들이 식사를 거르고, 도시락을 챙겨주지 못한 돌봄 방임은 2개(10.5%) 시설에서 보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Ⅲ-20>. 아동들이 생활하는 시설 내에 위해요소들이 존재하는 사례, 곰팡이나 쓰레기가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한 사례가 7개(36.8%) 시설에서 보고되어 방임행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친 상처에 의료처치를 하지 않아 짓물러져 있거나, 피부병을 방치한 사례 등 적절한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은 의료 방임 사례가 4개(21.1%) 시설에서 보고되었고, 다른 생활인과 격리되어 두려움을 느끼고, 원장과 종사자의 부재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고된, 감독방임 사례도 각각 1개(5.3%), 2개(10.5%) 시설에서 보고되었다.

5) APSAC(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and children)이 사용하는 정서학대 세부 범주에 따른 정서학대 유형분류

〈표 III-20〉 방임 유형 (중복포함)

(단위: 개, %)

Knutson의 방임유형	방임 하부 유형	연구에 사용된 코딩시스템 항목	시설 방임 사례의 예	빈도	%
돌봄방임	돌봄방임	“아동이 적절한 음식을 충분히 제공받고 있음”	아동들이 식사를 거르곤 하며, 소풍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도시락을 챙겨가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함	2	10.5
		“급식이 영양적으로 균형있게 제공되고 있음”	—	0	0.0
		“음식이 신선도나 청결 면에서 적절함”	—	0	0.0
돌봄방임	환경방임	“시설 아동의 물리적 환경은 안전하고 위생적임”	시설의 반 지하에 물이 차 있고 시설 정리가 되지 않아 있으며, 쓰레기와 곰팡이가 매우 많이 있는 상태임.	2	10.5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0	0.0
	환경방임	“시설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며 위험요소가 없음”	미신고 장애인 시설에서 고물상내(유리병, 부탄가스 노출) 가건물의 안전에 위협되는 요소 속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고 함	1	5.3
		“아동을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였음”	곰팡이와 쓰레기가 있는 환경에 아동을 방치해 두어, 장마기간 중 누수가 된 것이라 하였지만, 2년 전에도 동일한 상태였다고 함	7	36.8
의료방임	의료방임	“필요한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았음”	아동 왼쪽 눈가에 멍 들어 있었으며 여름방학 전부터 있었던 피부병이 지속되고 넓어져 다친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아 짓물러 있었다고 함	4	21.1
감독방임	감독방임	“교사가 아동을 혼자 두었음”	밤에 아동들만 놔두고 종사자가 외출을 함	1	5.3
		“충분한 대체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채 아동을 혼자 두었음”	원장과 종사자의 부재로 인해 적절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채 보호자 없는 상황에서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함	2	10.5
합 계				19	100.0

4) 학대 발생 빈도와 기간

학대 발생 빈도는 학대 행위가 실제로 얼마나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가늠하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학대 수준과 함께 학대의 발생 빈도는 시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학대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각 학대유형별 발생 빈도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학대 발생 빈도와 기간

① 신체학대 발생 빈도

중복학대로 분류된 신체학대까지 포함하여 신체학대를 판정받은 시설은 총 61개시설로 보고되었다. 28개(45.9%)의 시설은 1회의 신체학대 행위를 통해서 학대사례로 판정 받았다. 2회 이상 신체학대가 발생하였지만, 학대가 간혹 발생했던 시설은 19개(31.1%) 시설로 나타난 반면, 학대 행위가 장기간 자주 발생하여 특정 횟수를 파악할 수 없었던 시설은 12개(19.7%)의 시설로 조사되었다. 즉, 2회 이상 신체학대가 발생했던 시설은 31개 시설로 신체학대가 발생했던 전체 61개 시설의 과반수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학대 빈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시설이 2개(3.3%) 시설로 보고되었다.

〈표 III-21〉 신체학대 발생 빈도

(단위: 개, %)

신체학대 발생 빈도	빈 도	백분율
1회	28	45.9
2회 이상 (간혹 발생)	19	31.1
2회 이상 (장기간 자주 발생)	12	19.7
모름 또는 파악 안 됨	2	3.3
합 계	61	100.0

② 신체학대 발생 기간

신체학대가 발생했던 61개 시설에서의 학대 발생 기간을 분석한 결과, 1일(1회)동안 발생했던 신체학대는 28개(45.9%) 시설에서였다. 2일 이상에 걸쳐 신체학대가 발생했던 시설은 17개(27.9%) 시설로 나타났으며, 장기간에 걸쳐 신체학대가 발생했던 시설은 11개(18%) 시설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5개 시설(8.2%)에서는 신체학대가 발생했던 기간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신체학대 발생 기간

(단위: 개, %)

신체학대 발생 기간	빈도	백분율
1일(1회)	28	45.9
2일 이상	17	27.9
장기간	11	18.0
모름 또는 파악 안 됨	5	8.2
합계	61	100.0

(2) 정서학대 발생 빈도 및 기간

① 정서학대 발생 빈도

학대사례 판정을 받은 90개의 시설 중에서 정서학대가 발생된 것으로 판정된 시설은 총 63개의 시설로, 이들 중 1회의 학대행위가 있었던 시설은 23개(36.5%) 시설로 보고되었다. 반면, 2회 이상의 정서학대 행위가 발생했던 시설은 32개 시설로, 이들 중 정서학대 행위가 간혹 발생했던 시설은 13개(20.6%) 시설, 장기간 자주 행위가 발생했던 시설은 19개(30.2%) 시설로 나타났다. 즉, 정서학대 행위가 발생했던 시설의 50.8%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정서학대 행위가 2회 이상에 걸쳐 발생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정서학대 행위가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 파악되지 못한 시설은 8개(12.7%) 시설로 나타났다.

〈표 III-23〉 정서학대 발생 빈도

(단위: 개, %)

정서학대 발생 빈도	빈 도	백분율
1회	23	36.5
2회 이상 (간혹 발생)	13	20.6
2회 이상 (장기간 자주 발생)	19	30.2
모름 또는 파악 안 됨	8	12.7
합 계	63	100.0

② 정서학대 발생 기간

정서학대가 발생했던 63개의 시설에서의 학대 발생 기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24〉에 제시되었다. 1일에 그친 정서학대 행위는 23개(36.5%)의 시설에서 발생했다. 반면, 2일 이상 정서학대 행위가 발생했던 시설은 28개(44.5%)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정서학대 행위가 장기간 발생했던 시설은 17개(27%) 시설로 보고되었다. 정확한 학대행위 기간이 파악되지 않았던 시설은 12개(29%)였다.

〈표 III-24〉 정서학대 발생 기간

(단위: 개, %)

정서학대 발생 기간	빈 도	백분율
1일(1회)	23	36.5
2일 이상	11	17.5
장기간	17	27.0
모름 또는 파악 안 됨	12	29.0
합 계	63	100.0

(3) 성학대 발생 빈도 및 기간

① 성학대 발생 빈도

성학대로 판정받은 시설은 중복학대 중 성학대가 포함된 시설까지 포함하여 총 9개의 시설로, 1회의 성학대 행위로 인해 학대 판정을 받은 시설은 3개(33.3%) 시설, 2회 이상 성학대가 발생한 시설 중 성학대가 간혹 발생했던 시설은 4개(44.5%) 시설에서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성학대가 장기간 자주 발생했던 시설은 2개(22.2%) 시설에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성학대로 판정받은 9개의 시설에서 학대행위는 2회 이상 발생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5〉 성학대 발생 빈도

(단위: 개, %)

성학대 발생 빈도	빈 도	백분율
1회	3	33.3
2회 이상 (간혹 발생)	4	44.5
2회 이상 (장기간 자주 발생)	2	22.2
모름 또는 파악 안 됨	0	0.0
합 계	9	100.0

② 성학대 발생 기간

성학대를 판정을 받은 9개의 시설에서의 학대행위 기간을 분석한 결과, 1회성으로 학대가 발생한 시설은 3개(33.3%) 시설로 나타났으나, 2일 이상 성학대 행위가 있었던 시설은 총 5개 시설(55.5%)로 이들 중 성학대 행위가 간혹 발생한 시설과 장기간 자주 발생한 시설은 각각 2개(22.2%), 3개(33.3%) 시설로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 1회의 단발성 학대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가 성학대 발생 전체 시설의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 성학대 발생 기간

(단위: 개, %)

성학대 발생 기간	빈 도	백분율
1일(1회)	3	33.3
2일 이상	2	22.2
장기간	3	33.3
모름 또는 파악 안 됨	1	11.1
합 계	9	100.0

(4) 방임 발생 빈도 및 기간

① 방임 발생 빈도

방임을 판정받은 12개 시설의 25%에 해당하는 3개의 시설에서 1회의 방임행위가 발생했으며, 2회 이상 간혹 방임행위가 발생했던 시설은 3개(25%) 시설, 2회 이상 자주 방임행위가 발생했던 시설은 6개(50%) 시설로 나타났다. 이는 방임행위가 발생했던 시설에서 아동의 75%가 2회 이상 방임을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표 III-27〉 방임 발생 빈도

(단위: 개, %)

방임 발생 빈도	빈 도	백분율
1회	3	25.0
2회 이상 (간혹 발생)	3	25.0
2회 이상 (장기간 자주 발생)	6	50.0
모름 또는 파악 안 됨	0	0.0
합 계	12	100.0

② 방임 발생 기간

방임이 발생했던 12개의 시설에서 2일 이상 학대행위가 발생했던 시설은 9개의 시설

로, 이들 중 장기간에 걸쳐 방임행위가 발생했던 시설은 5개(41.7%) 시설로 나타났다. 1일 동안 방임행위가 이루어졌던 시설은 3개(25%) 시설, 2일 이상 방임행위가 이루어졌던 시설은 4개(33.3%) 시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임을 판정받은 시설 중에서 절반 이상의 시설에서 2일 이상에 걸쳐 학대행위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표 III-28〉 방임 발생 기간

(단위: 개, %)

방임 발생 기간	빈 도	백분율
1일(1회)	3	25.0
2일 이상	4	33.3
장기간	5	41.7
모름 또는 파악 안 됨	0	0.0
합 계	12	100.0

6. 아동학대사례 최종조치 결과

학대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설자체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2010년부터 2012년 최근 3년 사이 학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 90개의 시설에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시설 자체에 대해 조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를 판정받은 90개의 모든 시설에 대해 하나 이상의 관련 조치들을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아동학대사례 최종조치 유무

(단위: 개, %)

최종조치 유무	빈 도	백분율
유	90	100.0
무	0	0.0
합 계	90	100.0

지난 3년간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행한 개입 및 조치를 피해아동, 행위자, 시설에 따라 각각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

(1) 전체 피해아동 최종조치 유무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 유무는 <표 Ⅲ-30>과 <표 Ⅲ-31>에 제시되어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는 학대판정을 받은 90개 시설의 369명 아동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와 시설에서 2명 이상의 아동이 학대판정을 받았을 경우 각 시설에서 학대수준⁶⁾이 높은 아동을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즉, <표 Ⅲ-30>는 학대로 판정된 90개 시설에서 학대를 경험한 369명 아동에게 내려진 최종조치의 유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며, <표 Ⅲ-31>은 학대수준이 높은 아동을 시설 단위별로 선별하여 최종조치의 유무를 살핀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학대판정을 받은 피해아동 369명에게 내려진 최종조치 유무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96.5%에 해당하는 356명의 피해아동에게 하나 이상의 최종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0> 전체 피해아동 최종조치 유무

(단위: 명, %)

최종조치 유무	빈 도	백분율
유	356	96.5
무	13	3.5
합 계	369	100.0

6) 폭력의 수준이 높거나 학대행위가 중복되거나 빈도가 빈번한 아동을 학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선별하였으며, 학대수준이 동일하게 보고된 아동들의 경우에는 랜덤으로 아동을 선별하였다.

(2) 전체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학대를 판정받은 전체 369명의 피해아동에게 내려진 구체적인 최종조치는 <표 III-3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최종조치는 중복조치가 포함된 결과이다. 피해아동에게 내려진 최종조치는 교육, 치료 상담 및 서비스가 47.5%였으며, 전원조치가 36.6%로 보고되었다. 그 외에 원가정 복귀는 19건(3.9%), 가정위탁 및 시설, 친인척 일시보호, 격리조치는 21건(4.3%), 지속관찰 및 모니터링은 36건(7.4%), 멘토링 및 지원방안 안내는 1건(0.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시설에서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에게는 주로 교육, 치료, 상담 및 서비스 또는 전원조치의 최종조치가 가장 많이 내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32> 전체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중복포함)

(단위: 명, %)

조치 내용	빈도	백분율
교육, 치료, 상담 및 서비스 (법률자문 포함)	231	47.5
원가정 복귀	19	3.9
가정위탁 및 시설, 친인척 일시 보호, 격리조치	21	4.3
전원조치	178	36.6
멘토링 및 지원방안 안내 서비스	1	0.3
지속관찰 및 모니터링	36	7.4
합계	486	100.0

(3) 시설 단위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유무

시설 단위별 피해아동, 즉 각 시설에서 학대수준이 높은 아동 1명씩을 선별하여 이들 90명에 대한 최종조치 유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3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92.2%에 해당하는 83명의 아동은 하나 이상의 최종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수준이 높은 아동들에게 내려진 최종조치의 비율은 학대를 판정받은 전체 피해아동들이 받은 최종조치의 비율보다 4.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다 심

한 학대를 경험하면 최종조치가 내려지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31〉 시설 단위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유무

(단위: 명, %)

최종조치 유무	빈 도	백분율
유	83	92.2
무	7	7.8
합 계	90	100.0

(4) 시설 단위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시설별 학대수준이 높은 90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역시 전체 피해아동 36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그 구체적인 결과는 〈표 Ⅲ-33〉에 제시하였다. 최종조치를 받은 아동들 중 48명(42.4%)이 교육, 치료, 상담 및 서비스를 받았으며, 34명(30.1%)의 아동은 학대발생 시설로부터 전원조치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속 관찰 및 모니터링이 15명(13.3%), 원가정 복귀가 8명(7.1%), 가정위탁 및 시설, 친인척 일시보호, 격리조치가 7명(6.2%), 멘토링 서비스가 1명(0.9%)으로 보고되었다. 시설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중 지속관찰 및 모니터링은 15명(13.3%)으로, 전체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중 지속관찰 및 모니터링 36명(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3〉 시설 단위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중복포함)

(단위: 명, %)

조치 내용	빈 도	백분율
교육, 치료, 상담 및 서비스 (법률자문 포함)	48	42.4
원가정 복귀	8	7.1
가정위탁 및 시설, 친인척 일시 보호, 격리조치	7	6.2
전원조치	34	30.1
멘토링 및 지원방안 안내 서비스	1	0.9
지속관찰 및 모니터링	15	13.3
합 계	113	100

2) 학대 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1)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유무

90개의 시설에서 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행위자는 114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명 이상의 행위자가 있었던 시설을 포함한 수치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최종조치를 받았던 행위자는 94명(82.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조치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행위자는 2명(1.7%)으로 보고되었다.

〈표 III-34〉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유무

(단위: 명, %)

최종조치 유무	빈 도	백분율
유	94	82.5
무	18	15.8
파악 안 됨	2	1.7
합 계	114	100.0

(2)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최종조치는 해임 또는 전근이 30건(2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담 및 교육, 치료프로그램 실시가 29건(22.8%)으로 나타나, 해임 또는 전근에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대행위자의 자진퇴사도 20건(15.8%)으로 보고되었고, 고소고발의 중대조치는 14건(11.0%)으로 보고되었다. 지속적인 관찰 및 모니터링과 징계 및 감봉, 벌금은 각각 13건(10.3%), 12건(9.4%)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 및 분포는 〈표 III-35〉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III-35〉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 (중복포함)

(단위: 건, %)

조치 내용	빈 도	백분율
고소고발	14	11.0
해임 또는 전근	30	23.6
징계 및 감봉, 벌금	12	9.4
상담 및 교육, 치료프로그램 실시	29	22.8
경고 및 주의조치	7	5.5
지속관찰 및 모니터링	13	10.3
자진퇴사(사직)	20	15.8
파악 안됨	2	1.6
합 계	127	100.0

3) 시설 운영에 대한 최종조치

(1) 시설 최종조치 유무

학대판정을 받은 90개의 시설 중 80개(88.9%)의 시설에 대해 최종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 대한 최종조치 유무의 분석 결과는 〈표 III-36〉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36〉 시설 최종조치 유무

(단위: 개, %)

최종조치 유무	빈 도	백분율
유	80	88.9
무	10	11.1
합 계	90	100.0

(2) 시설 최종조치 결과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결과 내용은 〈표 III-3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니터

량이 54건(43.5%)으로 시설에 대해 내려진 최종조치의 항목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경고 및 주의조치와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이 각각 25건(20.2%), 14건(11.3%)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조치의 경우, 시설 폐쇄가 9건(7.3%), 자진폐쇄가 4건(3.2%), 관할 지자체 의뢰 및 시 결과통보 또는 운영 일시정지가 9건(7.3%)으로 시설에 대한 최종조치 전체의 17.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7〉 시설 최종조치 결과 (중복포함)

(단위: 건, %)

조치 내용	빈 도	백분율
시설폐쇄	9	7.3
시설장 교체 및 각서	1	0.8
시설점검 및 전수조사	3	2.4
관할지자체의 의뢰 및 시에 결과 통보, 운영 일시정지	9	7.3
경고 및 주의조치	25	20.2
모니터링	54	43.5
종사자 상담 및 서약서 작성	5	4.0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14	11.3
자진폐쇄	4	3.2
합 계	124	100.0

7. 학대 판정유형에 따른 비교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혹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이후, 학대사례, 잠재 위험사례, 일반사례로 판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학대사례의 특징은 잠재위험사례 및 일반사례와의 비교·대조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학대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를 전반적 특징과 학대유형별 특징으로 구분하여 비교·대조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비교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집단을 전반적인 특성과 학대유형별 특성에 따라 비교한 분석결과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1) 전반적인 특성 비교

아동과 행위자의 성별 및 나이, 아동의 장애유무, 아동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자 다수 여부, 신고년도, 지역 등의 전반적인 특징에 따른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를 비교한 결과는 <표 III-38>에 요약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수준 $p < .05$ 에서 중복학대의 유무에 따라 두 판정 유형 간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복학대의 경우 학대사례에서 중복율이 더 높았다. 이는 중복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의 비율은 잠재위험사례에서보다 학대사례에서 더욱 높음을 의미한다. 즉, 잠재위험사례보다는 학대사례에서 중복학대의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또한, 유의수준 $p < .01$ 에서 시설에 내려진 최종조치 수에 따라 두 판정 유형 간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대사례의 경우 88.9%의 시설에서 시설에 대한 최종조치가 1개 이상 내려진 반면, 잠재위험사례의 경우는 1개 이상의 최종조치를 받은 시설은 58.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시설운영에 관한 최종조치 역시 잠재위험사례에서보다는 학대사례에서 조치비율이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수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수, 스크리닝 점수는 유의수준 $p < .001$ 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학대사례의 경우 92.2%가, 잠재위험사례에서는 47%가 피해아동에게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학대판정사례 81.1%가 행위자에게 1개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 잠재위험사례 35.2%보다 훨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아동이나 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수는 잠재위험사례에서보다는 학대사례에서 더욱 많고, 스크리닝 척도 점수 역시 잠재위험사례에서보다는 학대사례에서 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아동학대 스크리닝 척도는 현장조사 시 상담원이 직접 현장에서 사용하는 척도(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로, 아동학

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를 구분하고 학대유형을 판단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학대사례의 경우 이 스크리닝 점수가 평균 4.64점인데 반해,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평균 1.71점으로 나타나 두 판정유형 간 2.5배 이상의 점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학대 행위자의 성별 및 나이를 비롯하여 아동장애유무, 행위자 다수여부, 신고년도, 지역, 기관유형, 학대유형은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III-38〉 전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비교⁷⁾

(단위: 건, %)

구 분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동 성별	남자	54	60.0	11	64.7	0.133
	여자	36	40.0	6	35.3	
아동 장애유무	장애 없음	80	88.9	16	94.1	-
	신체장애	2	2.2	1	5.9	
	정신(지적)장애	8	8.9	-	-	
행위자 성별	남자	52	46.0	9	34.6	1.116
	여자	61	54.0	17	65.4	
행위자 다수여부	단독	76	86.4	12	70.6	1.880
	2인 이상	14	15.6	5	29.4	
신고년도	2010	36	40.0	3	17.6	3.561
	2011	22	24.4	7	41.2	
	2012	32	35.6	7	41.2	

7) χ^2 분포를 사용하여 통계적 검증을 실시할 때, 획득빈도(각 범주에 포함된 빈도)와 기대빈도(영가설이 참일 때 각 범주에 기대되는 빈도)가 5보다 작은 칸(cell)이 전체 칸 수의 20%이하여야 한다(성태제, 2007).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아동이 아닌, 시설로 학대사례의 경우 전체 빈도수가 90개, 잠재사례의 경우 17개, 일반사례의 경우 58개로 해당 사례 수가 작을 뿐 아니라, 학대사례와 잠재사례, 학대사례와 잠재사례, 잠재사례와 일반사례의 비교·대조를 통해 학대사례의 특징을 밝히기 위한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5보다 작은 칸의 빈도도 제시하였다.

지 역	서울권	2	2.2	2	11.8	4,287
	광역시권	18	20.0	2	11.8	
	경기도권	27	30.0	4	23.5	
	그 외 지역	43	47.8	9	52.9	
기관유형	아동양육시설	53	58.9	9	52.9	-
	공동생활가정	19	21.1	2	11.8	
	일시보호시설	5	5.6	-	-	
	기 타	13	14.4	6	35.3	
신체학대	유	61	67.8	13	76.5	0.507
	무	29	32.2	4	23.5	
정서학대	유	63	70.0	10	58.8	0.824
	무	27	30.0	7	41.2	
방임	유	13	14.4	-	-	-
	무	77	85.6	17	100.0	
성학대	유	9	10.0	-	-	-
	무	81	90.0	17	100.0	
중복학대	유	54	60.0	5	29.4	5,409*
	무	36	40.0	12	70.6	
학대유형 중복 수	1개	36	40.0	12	70.6	-
	2개	49	54.4	5	29.4	
	3개	5	5.6	-	-	
피해아동 조치 수	없음	7	7.8	9	52.9	23,442***
	1개	55	61.1	4	23.5	
	2개 이상	28	31.1	4	23.5	
행위자 조치 수	없음	17	18.9	11	64.7	15,818***
	1개	58	64.4	4	23.5	
	2개 이상	15	16.7	2	11.8	
시설 조치 수	없음	10	11.1	7	41.2	10,487**
	1개	46	51.1	4	23.5	
	2개 이상	34	37.8	6	35.3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아동 연령	12.79	3.387	11.71	3.514	1.172
행위자 연령	42.82	11.974	36.17	14.714	2.068
스크리닝 점수	4.64	2.376	1.71	1.213	4.964***
시설 내 전체 행위자 수	1.40	1.305	1.53	1.068	-0.441
신고 아동 수	4.92	7.375	5.65	6.154	-0.431
판정 아동 수	4.07	6.655	4.29	4.579	-0.173

*, p<.05, **, p<.01, ***, p<.001, †; p<.10

(2) 학대유형별 비교

학대유형⁸⁾에 따른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를 비교·대조한 결과는 <표 III-39>에 요약하였다. 신체학대의 경우, 도구사용 여부에 따라 두 판정유형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를 사용하여 학대를 하는 비율이 학대사례는 54.1%, 잠재위험사례는 15.4%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체학대의 유무로 이 두 판정 유형간 차이는 없었으나, 도구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학대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중요한 기준으로 관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신체학대의 경우 유의수준 p<.10에서 행위자의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의 경우 남자가 41.6%인 반면,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17.6%로 나타나 학대사례의 경우 행위자가 남성일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서학대의 경우, 행위자의 수에 따라 두 판정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로 학대판정을 받은 사례 중에서 행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36%, 잠재위험사례의 경우는 63.2%로 나타났다.

8) 시설사례의 경우, 학대사례(90개 시설)와 잠재위험사례(17개 시설), 일반사례(58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수가 적기 때문에, 방임과 성학대의 경우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설 수가 확보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대유형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에 따른 분석결과만 제시하였다.

〈표 III-39〉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비교

(단위: 건, %)

구 분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신체학대						
신체 손상	유	26	57.4	4	30.8	0.625
	무	35	42.6	9	69.2	
도구 사용	유	33	54.1	2	15.4	6.443*
	무	28	45.9	11	84.6	
행위자 수	단독	46	59.7	10	55.6	0.106
	2명 이상	31	40.3	8	44.4	
행위자 성별	남자	32	41.6	3	17.6	3.407+
	여자	45	58.4	14	82.4	
행위자 관계	시설장	17	22.1	3	16.7	1.228
	생활지도원	45	58.4	13	72.2	
	종사자 및 기타	15	19.5	2	11.1	
정서학대						
행위자 수	단독	48	64.0	7	36.8	4.606*
	2명 이상	27	36.0	12	63.2	
행위자 성별	남자	36	48.6	6	31.6	1.779
	여자	38	51.4	13	68.4	
행위자 관계	시설장	20	26.7	5	26.3	0.330
	생활지도원	39	52.0	11	57.9	
	종사자 및 기타	16	21.3	3	15.8	

*, <.05, **, p<.01, ***, p<.001, †; p<.10

이상에서 볼 때, 전반적 특성에 관해서는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사이에 중복학대의 유무, 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수, 시설에 대한 최종조치 수, 스크리닝 점수 등에서 다소 간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대의 종류에서는 중복학대의 경우, 스크리닝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학대사례의 경우에는 행위자, 시설에 대한 최종조치를 1개 이상 내린 비율이 잠재위험사례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학대 행위로는 신체학대에서 도구를 이용한 경우, 행위자가 남자일 경우가 학대사례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정서학대의 경우는 행위자가 1명인 경우가 잠

재위험사례보다 학대사례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전반적인 특성과 학대유형별 특성에 따라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집단을 비교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인 특성 비교

전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를 비교한 결과, 중복학대 여부, 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수, 시설에 대한 최종조치 수, 스크리닝 점수에서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에서는 중복학대가 60%인 반면, 일반사례에서는 17.2%가 중복학대였으며, 2개 이상의 학대유형이 중복되는 경우 또한 학대사례가 60%, 일반사례가 17.2%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최종조치에 있어서, 학대사례와 일반사례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행위자에게 1개 이상의 최종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학대사례의 81.1%, 일반사례의 22.4%, 시설에 1개 이상의 최종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학대사례의 88.9%, 일반사례의 25.9%를 차지하여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사례의 경우 행위자, 시설에 대해 더욱 많은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했음을 의미한다. 스크리닝 점수에서도 학대사례와 일반사례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학대사례의 경우 평균 4.64점이 확인되었으나, 일반사례의 경우 1.71로 학대사례가 일반사례보다 약 2.5배 이상 높은 스크리닝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0〉 전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단위: 건, %)

구 분	학대사례		일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동 성별	남자	54	60.0	33	57.9	0.064
	여자	36	40.0	24	42.1	
아동 장애 유무	장애 없음	80	88.9	52	89.7	0.371
	신체장애	2	2.2	2	3.4	
	정신(지적)장애	8	8.9	4	6.9	
행위자 다수여부	단독	76	84.4	53	91.4	1.516
	2인 이상	14	15.6	5	8.6	
행위자 성별	남자	9	34.6	17	32.1	0.051
	여자	17	65.4	36	67.9	
신고년도	2010	36	40.0	14	24.1	6.759
	2011	22	24.4	11	19.0	
	2012	32	35.6	33	56.9	
지 역	서울권	2	2.2	2	3.4	2.802
	광역시권	18	20.0	9	15.5	
	경기도권	27	30.0	12	20.7	
	그 외 지역	43	47.8	35	60.3	
기관유형	아동양육시설	53	58.9	36	62.1	-
	공동생활가정	19	21.1	11	19.0	
	일시보호시설	5	5.6	-	-	
	기 타	13	14.4	11	19.0	
신체학대	유	61	67.8	34	58.6	1.287
	무	29	32.2	24	41.4	
정서학대	유	63	70.0	22	37.9	14.837
	무	27	30.0	36	62.1	
방임	유	13	14.4	9	15.5	0.786
	무	77	85.6	49	84.5	
성학대	유	9	10.0	4	6.9	0.424
	무	81	90.0	54	93.1	
중복학대	유	54	60.0	10	17.2	26.274***
	무	36	40.0	48	82.8	

학대유형 중복 수	1개	36	40.0	48	82.8	
	2개	49	54.4	10	17.2	-
	3개	5	5.6	-	-	
피해아동 조치 수	없음	7	7.8	44	75.9	
	1개	55	61.1	14	24.1	-
	2개 이상	28	31.1	-	-	
행위자 조치 수	없음	17	18.8	45	77.6	
	1개	58	64.4	12	20.7	50.569***
	2개 이상	15	16.7	1	1.7	
시설 조치 수	없음	10	11.1	43	74.1	
	1개	46	51.1	12	20.7	62.452***
	2개 이상	34	37.8	3	5.2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아동 연령		12.79	3.387	11.71	3.514	1.172
행위자 연령		36.17	14.714	37.16	12.042	-0.283
스크리닝 점수		4.64	2.376	1.71	1.213	4.964***
시설 내 전체 행위자 수		1.40	1.305	1.53	1.068	-0.441
신고 아동 수		4.92	7.375	5.65	6.154	-0.431
판정 아동 수		4.07	6.655	4.29	4.579	-0.173

*; p<.05, **; p<.01, ***; p<.001, †; p<.10

(2) 학대유형별 비교

학대유형별 구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41>에 제시되어 있다. 신체학대에서는 행위자 수에서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학대의 경우 행위자 성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신체학대에서 행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학대사례는 40.3%, 일반사례는 18.2%로 나타났다. 행위자가 단독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보다 여러 명이 학대를 한 경우, 학대로 판정되는 사례들이 2배 이상 더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서학대에서 학대행위자의 성별이 p <.01 수준에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남자인 비율이 학대판정사례의 경우 48.6%, 일반사례의 경우 17.4%로 나타났다.

〈표 III-41〉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단위: 건, %)

구 분	학대사례		일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신체학대						
신체 손상	유	26	57.4	11	32.4	0.968
	무	35	42.6	23	67.6	
도구 사용	유	33	54.1	21	61.8	2.200
	무	28	45.9	13	38.2	
행위자 수	단독	46	59.7	27	81.8	5.044*
	2명 이상	31	40.3	6	18.2	
행위자 성별	남자	32	41.6	10	31.3	1.014
	여자	45	58.4	22	68.8	
행위자 관계	시설장	17	22.1	6	18.2	0.292
	생활지도원	45	58.4	21	63.6	
	종사자 및 기타	15	19.5	6	18.2	
정서학대						
행위자 수	단독	48	64.0	16	69.6	0.241
	2명 이상	27	36.0	7	30.4	
행위자 성별	남자	36	48.6	4	17.4	7.075**
	여자	38	51.4	19	82.6	
행위자 관계	시설장	20	26.7	4	17.4	1.310
	생활지도원	39	52.0	15	65.2	
	종사자 및 기타	16	21.3	4	17.4	

*; $p < .05$, **; $p < .01$, ***; $p < .001$, †; $p < .10$

이상에서 볼 때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간에는 전반적 특성에 있어 중복학대 여부, 학대유형 중복 수, 피해아동 조치 수, 행위자 조치 수, 시설 조치 수, 스크리닝 점수에서 차이를 보였고 학대유형별 학대 특성에서도 행위자의 수와 행위자 성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일반사례에 비해 학대사례가 더 심각한 학대행위나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학대사례로 분류되는 경향을 보였다.

3)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를 비교하는 것 외에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를 비교를 통해 학대사례와 이들 판정 유형 간의 차이를 보다 실증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인 특성과 학대유형에 따라 이들 판정 유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인 특성 비교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의 전반적인 특성을 비교한 결과, 행위자 다수 여부, 시설에 대한 최종조치 수, 시설 내 전체 행위자 수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행위자가 2인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29.4%인 반면, 일반 사례의 경우는 8.6%에 그쳤다. 시설에 대한 최종조치는 잠재위험사례에서 58.8%, 일반 사례에서 25.9%가 1개 이상의 조치를 받는 비율이 높았는데, 잠재위험사례가 일반 사례에 비해 시설에 대해 최종조치가 내려진 비율이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간에는 시설에 대해 내려지는 최종조치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에서는 특히, 행위자 다수 여부와 시설 내 행위자 수에 따라 두 유형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사례의 경우 행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29.4%로 나타난 반면, 일반사례의 경우 8.6%에 그쳤으며, 시설 내 행위자 수도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1.53명인데 반해, 일반사례의 경우 1.16명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일반사례에 비해 잠재위험사례에서 행위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 전반적인 특성에 따른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단위: 건, %)

구분	잠재사례		일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동 성별	남자	11 64.7	33 57.9		0.252
	여자	6 35.3	24 42.1		

아동 장애 유무	장애 없음	16	94.1	52	89.7	-
	신체장애	1	5.9	2	3.4	
	정신(지적)장애	-	-	4	6.9	
행위자 성별	남자	52	46.0	17	32.1	2,887(.089)
	여자	61	54.0	36	67.9	
행위자 다수여부	단독	12	70.6	53	91.4	4,918*
	2인 이상	5	29.4	5	8.6	
신고년도	2010	3	17.6	14	24.1	3,556
	2011	7	41.2	11	19.0	
	2012	7	41.2	33	56.9	
지 역	서울권	2	11.8	2	3.4	2,004
	광역시권	2	11.8	9	15.5	
	경기도권	4	23.5	12	20.7	
	그 외 지역	9	52.9	35	60.3	
기관유형	아동양육시설	9	52.9	36	62.1	-
	공동생활가정	2	11.8	11	19.0	
	일시보호시설	-	-	-	-	
	기 타	6	35.3	11	19.0	
신체학대	유	13	76.5	34	58.6	1,790
	무	4	23.5	24	41.4	
정서학대	유	10	58.8	22	37.9	2,346
	무	7	41.2	36	62.1	
방임	유	-	-	9	15.5	-
	무	17	100.0	49	84.5	
성학대	유	-	-	4	6.9	-
	무	17	100.0	54	93.1	

중복학대	유	5	29.4	10	17.2	1,217
	무	12	70.6	48	82.8	
학대유형 중복 수	1개	12	70.6	48	82.8	-
	2개	5	29.4	10	17.2	
	3개	-	-	-	-	
피해아동 조치 수	없음	9	52.9	44	75.9	-
	1개	4	23.5	14	24.1	
	2개 이상	4	23.5	-	-	
행위자 조치 수	없음	11	64.7	45	77.6	3,655
	1개	4	23.5	12	20.7	
	2개 이상	2	11.8	1	1.7	
시설 조치 수	없음	7	41.2	43	74.1	12,132**
	1개	4	23.5	12	20.7	
	2개 이상	6	35.3	3	5.2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아동 연령		11.71	3,514	12.89	4,148	-1,173
행위자 연령		42.82	11,974	37.16	12,042	2,653
스크리닝 점수		1.71	1,213	1.63	1,779	0,197
시설 내 전체 행위자 수		1.53	1,068	1.16	.451	2,122*
신고 아동 수		5.65	6,154	3.29	4,778	1,459
판정 아동 수		4.29	4,579	2.53	3,971	1,444

*; p<.05, **; p<.01, ***; p<.001, †; p<.10

(2) 학대유형별 비교

학대유형에 따라 학대의 구체적 특성에 대한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를 비교한 결과는 <표 III-43>에 제시되어 있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모두에서 행위자의 수가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두 판정 유형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모두에서 행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잠재위험사례에서 일반사례에서 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I-43> 학대유형별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단위: 건, %)

구 분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x^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신체학대						
신체 손상	유	2	15.4	13	38.2	2,260
	무	11	84.6	21	61.8	
도구 사용	유	4	30.8	11	32.4	0.011
	무	9	29.2	23	67.6	
행위자 수	단독	10	55.6	27	81.8	4.034*
	2명 이상	8	44.4	6	18.2	
행위자 성별	남자	3	17.6	10	31.3	1,504
	여자	14	82.4	22	68.8	
행위자 관계	시설장	3	16.7	6	18.2	0,515
	생활지도원	13	72.2	21	63.6	
	종사자 및 기타	2	11.1	6	18.2	
정서학대						
행위자 수	단독	7	36.8	16	69.6	4,497*
	2명 이상	12	63.2	7	30.4	
행위자 성별	남자	6	31.6	4	17.4	1,155
	여자	13	68.4	19	82.6	
행위자 관계	시설장	5	26.3	4	17.4	0,493
	생활지도원	11	57.9	15	65.2	
	종사자 및 기타	3	15.8	4	17.4	

*, p<.05, **, p<.01, ***, p<.001, † ; p<.10

이상에서 볼 때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간에는 전반적 특성에 있어 행위자 다수 형태, 피해아동과 시설에 대한 최종조치 수에서 두 판정 유형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 비교에서는 행위자의 수가 두 판정 유형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8. 최종조치 결과에 따른 비교

아동학대사례와 관련하여 조치결과는 초기조치 및 최종조치 결과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조치결과는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이후 처음으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취하는 조치결정이며, 최종조치결과는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통해 마지막 종결단계에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결정 유형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본 연구는 과거 3년인 2010년부터 2012년 동안의 시설 아동학대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 중인 특수사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례가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조치결과를 분석하였다.

각 판정 유형별 최종조치가 어떠한 형태로 취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향후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처분지침에 대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최종조치가 취해진 사례들만을 추출하여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에서 비교한 여러 특징들을 최종조치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시설 아동학대의 특징을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최종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신고·접수된 사례들에 대한 최종조치를 각 판정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III-44>에 제시하였다.

(1) 판정유형별 최종조치 유무

판정 유형별 최종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학대사례로 판정된 90개의 모든 시설에서 최종조치가 내려졌으며, 잠재위험사례는 전체 17개 시설 중에 11개(64.7%) 시설, 일반 사례는 전체 58개 시설 중에 19개(32.8%) 시설에 최종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순으로 최종조치가 내려진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대사례의 경우, 학대판정을 받은 모든 사례에 대해 어떤 형태이든 최소 1개 이상의 최종조치를 처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4〉 판정유형별 최종조치 유무

(단위: 개, %)

최종조치 유무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유	90	100.0	11	64.7	19	32.8
무	0	0.0	6	35.3	39	67.2
합 계	90	100.0	17	100.0	58	100.0

(2) 대상별 최종조치 유무

최종조치는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시설을 대상으로 취해질 수 있는데, 피해아동의 경우 학대사례로 판정된 전체 사례의 92.2%가 최종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위험사례는 전체의 47.1%, 일반사례는 전체의 24.1%가 최종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잠재위험사례나 일반사례에서보다 학대사례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가 학대행위자 및 시설을 대상으로 내려진 조치에 비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경우 학대사례의 81.1%, 잠재사례의 35.3%, 일반사례의 22.4%가 최종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조치의 경우 학대사례의 88.9%, 잠재사례의 58.8%, 일반사례의 25.9%가 최종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의 경우 최종조치는 학대행위자나 시설보다도 피해아동에게 최종조치가 가장 많이 취해졌으며,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시설에 대한 최종조치가 가장 많이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사례의 경우 최종조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그 중에서 시설에 대한 최종조치의 비율이 피해아동이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의 비율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5〉 대상별 최종조치 유무

(단위: 개, %)

최종조치 유무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피해 아동	유	83	92.2	8	47.1	14	24.1	72,904 (.000)
	무	7	7.8	9	52.9	44	75.9	
학대 행위자	유	73	81.1	6	35.3	13	22.4	52,478 (.000)
	무	17	18.9	11	64.7	45	77.6	
시설	유	80	88.9	10	58.8	15	25.9	60,736 (.000)
	무	10	11.1	7	41.2	43	74.1	
합 계		90	100.0	17	100.0	58	100.0	

(3) 최종조치 세부사항

① 피해아동 최종조치 세부사항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는 상담 및 서비스, 원가정복귀 및 일시보호, 전원조치, 멘토링 및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학대로 판정된 피해아동에게 상담, 심리검사, 치료, 교육이 최종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48건(42.5%), 전원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34건(30.1%), 멘토링 및 모니터링의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16건(14.2%),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일시보호, 격리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15건(13.3%)로 나타났다.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상담, 심리검사, 치료, 교육이 최종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6건(50%), 전원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4건(33.4%), 멘토링 및 모니터링의 조치,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일시보호, 격리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각각 1건씩(8.3%)로 나타났다. 일반사례 역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전원조치가 7건(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상담, 심리검사, 치료, 교육이 6건(42.9%), 멘토링 및 모니터링이 1건(7.1%)를 차지하였다.

〈표 III-46〉 피해아동 최종조치 세부사항 (중복 포함)

(단위: 건, %)

최종조치 세부사항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교육, 치료, 상담 및 서비스	48	42.5	6	50.0	6	42.9
원가정 복귀, 가정위탁 및 시설, 친인척 일시보호, 격리조치	15	13.3	1	8.3	0	0.0
전원조치	34	30.1	4	33.4	7	50.0
멘토링 및 지원방안 안내서비스, 지속관찰 및 모니터링	16	14.2	1	8.3	1	7.1
합 계	113	100.0	12	100.0	14	100.0

②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세부사항

다음으로, 학대행위자⁹⁾에 대한 최종조치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III-47〉에 제시되어 있다.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의 경우 학대사례에서 고소고발, 해임 또는 전근, 징계 및 감봉, 벌금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36건으로 40.5%를 차지한 반면, 잠재위험사례에서는 1건(12.5%), 일반사례에서는 6건(40%)을 차지하였다.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상담 및 교육, 치료 프로그램 조치가 5건(62.5%), 일반사례의 경우 경고 및 주의, 모니터링, 사직 조치가 7건(46.7%)을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표 III-47〉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세부사항 (중복포함)

(단위: 건, %)

최종조치 세부사항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고소고발	15	16.9	1	12.5	3	20.0
해임 또는 전근, 징계 및 감봉, 벌금	21	23.6	0	0	3	20.0

9) 학대행위자는 각 시설에서 2명 이상의 행위자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시설단위가 아닌 행위자 단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상담 및 교육, 치료프로그램	21	23.6	5	62.5	2	13.3
경고 및 주의, 모니터링, 사직	32	35.9	2	25.0	7	46.7
합 계	89	100.0	8	100.0	15	100.0

③ 시설 최종조치 세부사항

시설에 대한 최종조치에는 시설폐쇄 및 시설장 교체, 각서, 시설점검 및 전수조사, 관할지자체 결과통보, 운영일시정지, 경고 및 주의조치, 모니터링, 종사자 상담 및 서약서 작성 교육, 자진폐쇄가 포함되었다. 이 최종조치를 조치 수준에 따라서 구분한 유형은 <표 III-48>와 같다.

시설에 대한 최종조치의 경우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모두 경고 및 주의조치, 모니터링이 각각 63건(60.6%), 11건(73.3%), 11건(5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시설폐쇄와 운영일시정지의 경우 학대사례가 20건으로 잠재위험사례 2건, 일반사례 6건보다 더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48> 시설 최종조치 세부사항 (중복포함)

(단위: 건, %)

최종조치 세부사항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시설폐쇄, 시설장 교체 및 각서	10	9.6	1	6.7	3	15.8
시설점검 및 전수조사, 관할지자체 의뢰 및 시에 결과 통보, 운영 일시정지	10	9.6	1	6.7	3	15.8
경고 및 주의조치, 모니터링	63	60.6	11	73.3	11	57.9
종사자 상담 및 서약서 작성, 교육, 자진폐쇄	21	20.2	2	13.3	2	10.5
합 계	104	100.0	15	100.0	19	100.0

2) 최종조치 수준에 따른 집단 비교

앞서 기술된 것처럼, 학대판정 유형에 따라 최종조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최종조치의 수준의 경중을 구분하여 강력한 수준의 최종조치가 내려진 집단과 최종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 두 집단 간 차이를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시설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 수준

① 전반적 특성에 따른 피해아동 최종조치 수준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 수준은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유형과 강력한 수준의 조치(교육, 치료, 상담 및 서비스와 원가정 복귀, 가정위탁 및 시설, 친인척 일시보호, 격리조치)가 행해진 유형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학대판정 유형과 행위자 성별, 신고년도, 정서학대 및 방임 유무, 중복학대 유무, 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수, 시설에 대한 최종조치 수, 스크리닝 점수에 따라 피해아동의 최종조치 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판정유형의 경우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에서 강력조치가 압도적으로 많이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조치가 행해진 행위자의 경우, 여성인 경우가 약간 더 많이 나타났으며 2010년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의 경우, 학대로 판정되었을 때, 강력한 조치를 받은 사례가 49건(71%)였고,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사례는 22건(33.7%)에 해당하였으며 반대로 방임의 경우, 강력한 조치로 이어지는 비율은 다소 낮았다. 강력한 조치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학대의 비율은 55.1%를 차지하였으며, 학대 유형이 2개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는 55%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아동, 행위자, 시설의 조치 수에 따라서 $p < .001$ 유의수준에서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와 조치가 없었던 경우에 차이를 보였는데,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던 사례에서 행위자에게 1개 이상의 최종조치가 행해진 경우는 전체의 81.2%, 시설의 경우 전체의 92.7%가 1개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리닝 점수는 조치가 없

있던 집단에서 평균 1.80의 점수를,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졌던 집단에서 평균 4.09의 점수를 받아 약 2배가량의 점수 차이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49〉 전반적 특성에 따른 피해아동 최종조치 수준

(단위: 개, %)

구 분	조치 없음		강력 조치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대판정 유형	학대사례	7	11.7	57	82.6	68.247***
	잠재위험사례	9	15.0	6	8.7	
	일반사례	44	73.3	6	8.7	
아동 성별	남자	33	55.9	43	62.3	0.538
	여자	26	44.1	26	37.7	
아동 장애 유무	장애 없음	54	90.0	60	87.0	0.289
	신체장애	2	3.3	3	4.3	
	정신(지적)장애	4	6.7	6	8.7	
행위자 성별	남자	17	25.8	41	46.1	6.675*
	여자	49	74.2	48	53.9	
행위자 다수여부	단독	50	83.3	57	82.6	0.012
	2인 이상	10	16.7	12	17.4	
신고년도	2010	14	23.3	34	49.3	12.583**
	2011	12	20.0	16	23.2	
	2012	34	56.7	19	27.5	
지 역	서울권	3	5.0	2	2.9	1.365
	광역시권	9	15.0	13	18.8	
	경기도권	18	30.0	16	23.2	
	그 외 지역	30	50.0	38	55.1	
기관유형	아동양육시설	34	56.7	51	73.9	7.113
	공동생활가정	8	13.3	7	10.1	
	일시보호시설	1	1.7	3	4.3	
	기 타	17	28.3	8	11.6	
신체학대	유	40	66.7	47	68.1	0.031
	무	20	33.3	22	31.9	
정서학대	유	22	36.7	49	71.0	15.300***
	무	38	63.3	20	29.0	

방임	유	11	18.3	4	5.8	4.908*
	무	49	81.7	65	94.2	
성학대	유	3	5.9	5	7.9	0.182
	무	48	94.1	58	92.1	
중복학대	유	16	26.7	38	55.1	10.640**
	무	44	73.3	31	44.9	
학대유형 중복 수	1개	44	73.3	31	44.9	-
	2개	16	26.7	37	53.6	
	3개	-	-	1	1.4	
피해아동 조치 수	없음	59	98.3	-	-	-
	1개	1	1.7	37	53.6	
	2개 이상	-	-	-	-	
행위자 조치 수	없음	50	83.3	13	18.8	53.585***
	1개	8	13.3	40	58.0	
	2개 이상	2	3.3	16	23.2	
시설 조치 수	없음	48	80.0	5	7.2	71.379***
	1개	9	15.0	33	47.8	
	2개 이상	3	5.0	31	44.9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아동 연령		12.53	4.268	12.94	3.373	-0.601
행위자 연령		37.93	11.573	41.46	13.442	-1.676+
스크리닝 점수		1.80	1.883	4.09	2.490	-0.5790***
시설 내 전체 행위자 수		1.35	1.191	1.39	1.166	-0.198
신고 아동 수		3.05	4.586	5.78	8.317	-2.263*
판정 아동 수		2.53	4.023	4.43	7.161	-1.82+

*, p<.05, **, p<.01, ***, p<.001, †; p<.10

② 학대유형에 따른 피해아동 최종조치 수준

학대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최종조치 수준을 분석한¹⁰⁾ 결과,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10) 학대유형에 따른 최종조치 수준의 비교는 방임과 성학대의 경우 최종조치 수준을 구분할 만큼의 사례수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시설에 대한 최종조치 수준의 분석은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모두에서 행위자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이 강력한 조치를 받은 경우,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에서 모두 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 구체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집단과, 강력한 조치 집단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III-50〉 학대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최종조치 수준

(단위: 개, %)

구 분	조치 없음		강력 조치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신체학대						
신체 손상	유	16	40.0	15	31.9	0.616
	무	24	60.0	32	68.1	
도구 사용	유	11	27.5	22	46.8	3.422+
	무	29	72.5	25	53.2	
행위자 수	단독	29	60.4	35	61.4	0.011
	2명 이상	19	39.6	22	38.6	
행위자 성별	남자	9	19.6	24	42.1	5.940*
	여자	37	80.4	33	57.9	
행위자 관계	시설장	8	16.7	10	17.5	0.183
	생활지도원	30	62.5	37	64.9	
	종사자 및 기타	10	20.8	10	17.5	
정서학대						
행위자 수	단독	13	40.6	37	61.7	3.724+
	2명 이상	19	59.4	23	38.3	
행위자 성별	남자	5	15.6	29	49.2	9.965**
	여자	27	84.4	30	50.8	
행위자 관계	시설장	3	9.4	14	23.3	2.861
	생활지도원	22	68.8	33	55.0	
	종사자 및 기타	7	21.9	13	21.7	

*; p<.05, **; p<.01, ***; p<.001, † ; p<.10

이상에서 볼 때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는 학대판정 유형, 행위자 성별, 신고 년도, 정서학대와 방임 여부, 스크리닝 점수 등의 전반적인 특징에 있어 중대한 수준의 최종조치가 내려진 집단과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의 경우 학대로 판정되는 사례에 보다 강력한 최종조치가 내려졌으며, 학대행위자가 남성인 경우나 정서학대가 이루어진 경우, 중복으로 학대가 이루어진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와 시설에 대한 최종조치의 수 또한 조치의 경중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스크리닝 점수는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집단과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진 집단 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수준

① 전반적 특성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수준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 수준은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집단과 강력 조치(고소고발, 해임 또는 전근, 징계 및 감봉, 벌금)를 받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전반적 특성에 따른 이들 집단을 분석해본 결과 학대판정 유형, 행위자의 성별, 중복학대 유무, 피해아동과 시설에 대한 최종조치 수, 스크리닝 점수, 신고아동 수, 판정 아동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가 강력한 조치를 받은 집단은 학대판정을 받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학대 사례에서는 82.1%에 해당하는 반면, 조치를 받지 않는 집단에서는 학대 사례의 22.2%가 이에 해당하였다. 또한 강력한 조치를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강력한 조치를 받은 집단에서 중복학대가 있었던 경우, 2개 이상의 학대 유형이 중복된 경우가 각각 53.8%, 53.9%에 해당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피해아동과 시설에 대해서는 1개 이상의 최종조치를 받은 비율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집단보다 강력조치를 취한 집단에서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크리닝 점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집단이 평균 2.24점, 강력조치를 취한 집단이 평균 4.62점으로 약 2배가량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신고 아동 수와 판정 아동 수에서 두 집단은 유의 수준 $p < .05$ 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집

단의 경우 신고 아동 수와 판정 아동 수가 평균 2명 남짓이었던 반면,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 집단의 경우 신고 아동수와 판정 아동수가 평균 5명으로 더 높은 피해아동 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51〉 전반적 특성에 따른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 수준

(단위: 개, %)

구 분	조치 없음		강력 조치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대판정 유형	학대사례	16	22.2	32	82.1	36.945***
	잠재위험사례	11	15.3	1	2.6	
	일반사례	45	62.5	6	15.4	
아동 성별	남자	44	62.0	27	69.2	0.580
	여자	27	38.0	12	30.8	
아동 장애 유무	장애 없음	66	91.7	33	84.6	1.681
	신체장애	3	4.2	2	5.1	
	정신(지적)장애	3	4.2	4	10.3	
행위자 성별	남자	26	36.1	26	56.5	4.744*
	여자	46	63.9	20	43.5	
행위자 다수여부	단독	66	91.7	35	89.7	0.114
	2인 이상	6	8.3	4	10.3	
신고년도	2010	19	26.4	15	38.5	4.410
	2011	14	19.4	11	28.2	
	2012	39	54.2	13	33.3	
지 역	서울권	2	2.8	1	2.6	1.992
	광역시권	10	13.9	8	20.5	
	경기도권	23	31.9	8	20.5	
	그 외 지역	37	51.4	22	56.4	
기관유형	아동양육시설	37	51.4	19	48.7	2.532
	공동생활가정	15	20.8	12	30.8	
	일시보호시설	2	2.8	2	5.1	
	기 타	18	25.0	6	15.4	
신체학대	유	45	62.5	26	66.7	0.191
	무	27	37.5	13	33.3	

정서학대	유	28	38.9	24	61.5	5.212*
	무	44	61.1	15	38.5	
방임	유	13	18.1	4	10.3	1.445
	무	59	81.9	35	89.7	
성학대	유	4	6.6	5	13.2	1.234
	무	57	93.4	33	86.8	
중복학대	유	16	22.2	21	53.8	11,385**
	무	56	77.8	18	46.2	
학대유형 중복 수	1개	56	77.8	18	46.2	12,040**
	2개	15	20.8	18	46.2	
	3개	1	1.4	3	7.7	
피해아동 조치 수	없음	51	70.8	2	5.1	44,809***
	1개	12	16.7	26	66.7	
	2개 이상	9	12.5	11	28.2	
행위자 조치 수	없음	72	100.0	-	-	-
	1개	-	-	31	79.5	
	2개 이상	-	-	8	20.5	
시설 조치 수	없음	49	68.1	5	12.8	33,358***
	1개	18	25.0	20	51.3	
	2개 이상	5	6.9	14	35.9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아동 연령		12.63	4.129	12.36	3.815	0.343
행위자 연령		40.49	12.595	41.31	13.312	-0.322
스크리닝 점수		2.24	2.387	4.62	2.561	-4.767***
시설 내 전체 행위자 수		1.13	.529	1.33	1.344	-1.163
신고 아동 수		2.63	4.150	5.54	8.657	-2.398*
판정 아동 수		2.07	2.889	4.67	8.646	-2.328*

*, p<.05, **, p<.01, ***, p<.001, †; p<.10

②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수준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 수준을 분석한 결과,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에서 행위자 성별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경우 행위자의 성별은 남성인 비율이 더 높았고, 그에 반해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집단은 행위자가 여성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 수준

(단위: 개, %)

구 분	조치 없음		강력 조치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신체학대						
신체 손상	유	15	33.3	14	53.8	1.149
	무	30	66.7	12	46.2	
도구 사용	유	17	37.8	14	53.8	1.730
	무	28	62.2	12	46.2	
행위자 수	단독	36	73.5	21	67.7	0.304
	2명 이상	13	26.5	10	32.3	
행위자 성별	남자	14	29.8	17	54.8	4.895*
	여자	33	70.2	14	45.2	
행위자 관계	시설장	11	22.4	8	25.8	0.453
	생활지도원	29	59.2	19	61.3	
	종사자 및 기타	9	18.4	4	12.9	
정서학대						
행위자 수	단독	22	64.7	19	67.9	0.068
	2명 이상	12	35.3	9	32.1	
행위자 성별	남자	10	30.3	16	57.1	4.462*
	여자	23	69.7	12	42.9	
행위자 관계	시설장	9	26.5	9	32.1	1.148
	생활지도원	18	52.9	16	57.1	
	종사자 및 기타	7	20.6	3	10.7	

*; p<.05, **; p<.01, ***; p<.001, † ; p<.10

학대행위자에게 내려진 조치수준을 강력한 조치와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학대판정 유형과 행위자 성별, 정서학대와 중복학대의 유무, 학대 유형의 중복 수, 피해아동과 시설에 대한 최종조치 수, 스크리닝 점수, 신고아동 수와

판정아동 수에 의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일수록 학대행위자에게 중대한 수준의 조치가 취해졌고 학대행위자가 남자일 경우, 정서학대, 중복학대일 경우, 중복 학대 수가 많을수록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강력한 조치는 피해아동, 행위자, 시설의 조치 수와도 관련이 있었다.

구체적 학대 행위에 따른 학대행위자의 조치 수준을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에서 행위자가 남자인 경우 더 엄격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시설에 대한 최종조치 수준

① 전반적 특성에 따른 시설 최종조치 수준

시설에 대한 최종조치 수준은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집단과 강력한 조치(시설폐쇄, 시설장 교체 및 각서, 시설점검 및 전수조사, 관할지자체 의뢰 및 시에 결과 통보, 운영 일시정지)가 이루어진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전반적 특성에 따른 시설의 최종조치 수준은 학대판정 유형, 신고년도, 정서학대 유무,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 수, 스크리닝 점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판정을 받은 경우에 시설의 강력한 최종 조치 수준이 높았으며, 2010년의 경우, 강력한 최종조치를 받아 1년 단위로 점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받은 시설은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높은 수준의 조치를 받았으며, 조치가 없는 집단과 강력한 조치를 받은 집단 간의 평균 점수 차이는 약 1.22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III-53>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표 III-53> 전반적 특성에 따른 시설 최종조치 수준

(단위: 개, %)

구 분	조치 없음		강력 조치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대판정 유형	학대사례	12	19.7	18	72.0	22.083***
	잠재위험사례	6	9.8	2	8.0	
	일반사례	43	70.5	5	20.0	

아동 성별	남자	33	55.0	17	68.0	1,231
	여자	27	45.0	8	32.0	
아동 장애 유무	장애 없음	56	91.8	22	88.0	-
	신체장애	2	3.3	-	-	
	정신(지적)장애	3	4.9	3	12.0	
행위자 성별	남자	23	37.7	12	40.0	0,045
	여자	38	62.3	18	60.0	
행위자 다수여부	단독	54	88.5	21	84.0	0,325
	2인 이상	7	11.5	4	16.0	
신고년도	2010	15	24.6	10	40.0	6.924*
	2011	10	16.4	8	32.0	
	2012	36	59.0	7	28.0	
지 역	서울권	2	3.3	0	0.0	1,190
	광역시권	10	16.4	4	16.0	
	경기도권	15	24.6	5	20.0	
	그 외 지역	34	55.7	16	64.0	
기관유형	아동양육시설	36	59.0	11	44.0	-
	공동생활가정	8	13.1	10	40.0	
	일시보호시설	1	1.6	-	-	
	기 타	16	26.2	4	16.0	
신체학대	유	39	70.9	13	52.0	1,507
	무	22	36.1	12	48.0	
정서학대	유	21	34.4	18	72.0	10,101**
	무	40	65.6	7	28.0	
방임	유	10	16.4	3	12.0	0,547
	무	51	83.6	22	88.0	
성학대	유	3	5.5	3	13.0	1,315
	무	52	94.5	20	87.0	
중복학대	유	14	23.0	10	40.0	2,562
	무	47	77.0	15	60.0	
학대유형 중복 수	1개	47	77.0	15	60.0	-
	2개	14	23.0	9	36.0	
	3개	-	-	1	4.0	

피해아동 조치 수	없음	48	78.8	3	12.0	32.681***
	1개	9	14.8	15	60.0	
	2개 이상	4	6.6	7	28.0	
행위자 조치 수	없음	49	80.3	7	28.0	-
	1개	9	14.8	18	72.0	
	2개 이상	3	4.9	-	-	
시설 조치 수	없음	59	96.7	-	-	-
	1개	-	-	16	64.0	
	2개 이상	2	3.3	9	36.0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아동 연령		13.12	4.136	12.08	3.341	1.210
행위자 연령		37.45	11.410	42.44	12.801	-1.718+
스크리닝 점수		2.38	2.408	3.60	2.345	-2.162*
시설 내 전체 행위자 수		1.18	.619	1.16	.374	0.186
신고 아동 수		2.48	4.357	3.68	4.110	-1.213
판정 아동 수		2.18	3.854	2.28	1.514	-0.172

*, p<.05, **, p<.01, ***, p<.001, †; p<.10

② 학대유형에 따른 시설 최종조치 수준

학대유형에 따른 시설의 최종조치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집단과 강력 조치를 취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4〉 학대유형에 따른 시설 최종조치 수준

(단위: 개, %)

구 분	조치 없음		강력 조치		x ²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신체학대					
신체 손상	유	15 38.5	4 30.8		0.249
	무	24 61.5	9 69.2		

도구 사용	유	11	28.2	7	53.8	2.832+
	무	28	71.8	6	46.2	
행위자 수	단독	28	63.6	10	58.8	0.121
	2명 이상	16	36.4	7	41.2	
행위자 성별	남자	11	26.2	6	35.3	0.489
	여자	31	73.8	11	64.7	
행위자 관계	시설장	7	15.9	5	29.4	3.133
	생활지도원	29	65.9	7	41.2	
	종사자 및 기타	8	18.2	5	29.4	
정서학대						
행위자 수	단독	15	53.6	14	66.7	0.852
	2명 이상	13	46.4	7	33.3	
행위자 성별	남자	7	25.0	6	28.6	0.079
	여자	21	75.0	15	71.4	
행위자 관계	시설장	4	14.3	6	28.6	1.535
	생활지도원	17	60.7	11	52.4	
	종사자 및 기타	7	25.0	4	19.0	

*, p<.05, **, p<.01, ***, p<.001, †; p<.10

시설에 내려진 조치수준을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 집단과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학대판정 유형, 신고년도, 정서학대 유무,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 수, 스크리닝 점수에 따라 조치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 대한 조치 수준은 구체적인 학대 행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9. 판정관련 증거에 따른 판정유형별 비교

학대가 최초로 신고 되었을 때 실시하는 현장조사는 중요한데, 이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전제되어야 피해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방안이 수립가능하기 때문이다(문영희, 2009). 현장조사에서의 충분한 자료 수집은 학대판정에 있어 정확성을 높이고 피해아동에게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그러나 아동들은 학대를 경험하여도 때로는 해리증상을 보임으로써 임상적 기준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Herma, 2006). 특히, 국내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아동 학대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 되고 있는데, 이는 실제적인 발생률이 낮아서라기보다 아직 아동보호체계가 충분히 확립되지 못해 정확한 발견 및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한미현, 2008)으로 보고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시설 아동학대사례 분석연구에 현장조사에서의 판정관련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판정관련 증거는 진술과 물적 증거로 나눌 수 있는데¹¹⁾, 학대의심사례가 신고·접수 되면 현장 조사 시, 피해아동, 행위자, 시설장, 동료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동료아동(학대 및 비학대 포함), 사회복지사 및 담당공무원, 부모 및 보호자, 기타의 학교교사 등으로부터 관련 학대의심상황에 대한 진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진술 외에 구체적인 물적 증거로는 오디오, CCTV, 사진, 신체적 상흔, 도구, 전문인진단서 및 소견서, 기타, 현장 조사 상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학대 유형에 따른 진술 및 물적 증거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대사례와 잠재사례 비교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의 판정관련 증거를 분석한 결과, 두 판정유형 간에는 진술 보다는 물적 증거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의 경우 사진이 증거로 제시된 경우가 39개(43.3%)에 있었던 반면,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2개(11.8%) 시설에 그치고 있다. 학대사례의 경우 물적 증거의 수가 평균 1.42개인 반면 잠재위험사례는 .52개로 나타나 판정유형간 차이를 보였으며, 몇 명으로부터의 진술이 있는지 몇 개의 물적 증거가 있는지, 이 둘을 합산한 수에 따라서도 두 판정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정에서 제시되는 것이 증거이며, 진술 증거(testimonial evidence)와 물적 증거(physical evidence)의 두 가지가 있다(국립과학연구원, 2013 홈페이지 추출). 국내에선 진술 및 서류를 전문 증거로 규정하고 있다(권오걸, 2012).

〈표 III-55〉 판정관련 증거에 따른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비교

(단위: 건, %)

구 분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진	피해아동	유	81	90.0	16	94.1	0,286
		무	9	10.0	1	5.9	
	행위자	유	59	65.6	11	64.7	0,005
		무	31	34.4	6	35.3	
	시설장	유	13	14.4	3	17.6	0,115
		무	77	85.6	14	82.4	
	동료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유	19	21.1	2	11.8	0,792
		무	71	78.9	15	88.2	
술	동료아동	유	33	36.7	7	41.2	0,124
		무	57	63.3	10	58.8	
	사회복지사 및 담당공무원	유	4	4.4	2	11.8	1,448
		무	86	95.6	15	88.2	
	목격자	유	13	14.4	1	5.9	0,992
		무	77	85.6	16	94.1	
	부모 및 보호자	유	8	8.9	1	5.9	0,168
		무	82	91.1	16	94.1	
	기타 (학교 교사 등)	유	7	7.8	3	17.6	1,644
		무	83	92.2	14	82.4	
	녹음(오디오)	유	2	2.2	-	-	-
		무	88	97.8	17	100.0	
	비디오(CCTV)	유	2	2.2	-	-	-
		무	88	97.8	17	100.0	
물 적 증 거	사진	유	39	43.3	2	11.8	6,029*
		무	51	56.7	15	88.2	
	신체적 상흔	유	7	7.8	1	5.9	0,074
		무	83	92.2	16	94.1	
	도구	유	1	1.1	-	-	-
		무	89	98.9	17	100.0	
	전문인진단서 및 소견서	유	8	8.9	2	11.8	0,140
		무	82	91.1	15	88.2	

현장조사 상황	유	4	4.4	-	-	-
	무	86	95.6	17	100.0	-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진술의 수		2.63	1.185	2.71	1.105	-0.245
물적 증거의 수		0.70	0.800	0.29	0.588	1.990*
진술 및 물적 증거의 수		3.33	1.281	3.00	1.061	1.147

*, p<.05, **, p<.01, ***, p<.001, †; p<.10

2)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판정관련 증거에 따른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지의 유무와 사진이나 기타의 물적 증거가 있는지의 유무, 물적 증거의 수에 따라 두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의 경우 목격자의 진술이 뒷받침되었던 시설은 13개(14.4%)로 나타난 반면 일반사례의 경우 1개 시설(1.76%)로 나타났다. 학대를 판정하는 데 있어 사진이나 기타의 물적 증거가 제시되었던 시설은 각각 39개(43.3%), 65개(72.3%)로 나타나 일반사례를 판정받은 2개(3.4%), 3개(5.2%) 시설에 비해 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적 증거의 수도 일반사례보다 학대사례가 더 많게 나타나 두 판정유형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6〉 판정관련 증거에 따른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단위: 건, %)

구 분		학대사례		일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피해아동	유	81	90.0	54	93.1	0.424	
	무	9	10.0	4	6.9		
진술	행위자	유	59	65.6	39	67.2	0.045
		무	31	34.4	19	32.8	
시설장	유	13	14.4	13	22.4	1.547	
	무	77	85.6	45	77.6		

물 적 증 거	동료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유	19	21.1	19	32.8	2,507
		무	71	78.9	39	67.2	
	동료아동	유	33	36.7	21	36.2	0,003
		무	57	63.3	37	63.8	
	사회복지사 및 담당공무원	유	4	4.4	3	5.2	0,041
		무	86	95.6	55	94.8	
	목격자	유	13	14.4	1	1.76	6.663*
		무	77	85.6	57	98.3	
	부모 및 보호자	유	8	8.9	6	10.3	0,087
		무	82	91.1	52	89.7	
	기타 (학교 교사 등)	유	7	7.8	7	12.1	0,758
		무	83	92.2	51	87.9	
	녹음(오디오)	유	2	2.2	-	-	-
		무	88	97.8	58	100.0	
	비디오(CCTV)	유	2	2.2	-	-	-
		무	88	97.8	58	100.0	
	사진	유	39	43.3	2	3.4	28.015***
		무	51	56.7	56	96.6	
	신체적 상흔	유	7	7.8	1	1.7	2,528
		무	83	92.2	57	98.3	
도구	유	1	1.1	-	-	-	
	무	89	98.9	58	-		
전문인진단서 및 소견서	유	8	8.9	2	3.4	1,657	
	무	82	91.1	56	96.6		
현장조사 상황	유	4	4.4	2	3.4	0,090	
	무	86	95.6	56	96.6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진술의 수			2.63	1.185	3.41	4.761	-1.224
물적 증거의 수			0.70	0.800	0.12	0.422	5.077***
진술 및 물적 증거의 수			3.33	1.281	3.53	4.773	-0.314

*; p<.05, **; p<.01, ***; p<.001, †; p<.10

3)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판정관련 증거에 따른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타의 물적 증거 유무, 물적 증거의 수에 따라 두 판정유형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43.3%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증거로 제시되었지만, 일반사례의 경우 5.2%에 그치고 있다. 물적 증거의 수는 잠재위험사례로 판정받은 시설의 경우 평균 1.42개가 증거로 제시된 반면, 일반사례의 경우 평균 0.17개가 증거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7〉 판정관련 증거에 따른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단위: 건, %)

구 분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진	피해아동	유	16	94.1	54	93.1	0.022
		무	1	5.9	4	6.9	
	행위자	유	11	64.7	39	67.2	0.038
		무	6	35.3	19	32.8	
	시설장	유	3	17.6	13	22.4	0.178
		무	14	82.4	45	77.6	
	동료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유	2	11.8	19	32.8	2.874+
		무	15	88.2	39	67.2	
	동료아동	유	7	41.2	21	36.2	0.139
		무	10	58.8	37	63.8	
술	사회복지사 및 담당공무원	유	2	11.8	3	5.2	0.918
		무	15	88.2	55	94.8	
	목격자	유	1	5.9	1	1.76	0.876
		무	16	94.1	57	98.3	
	부모 및 보호자	유	1	5.9	6	10.3	0.309
		무	16	94.1	52	89.7	
	기타 (학교 교사 등)	유	3	17.6	7	12.1	0.354
		무	14	82.4	51	87.9	
물	녹음(오디오)	유	-	-	-	-	-

적 증 거	비디오(CCTV)	무	17	100.0	58	100.0	
		유	-	-	-	-	
	사진	무	17	100.0	58	100.0	1.801
		유	2	11.8	2	3.4	
	신체적 상흔	무	15	88.2	56	96.6	0.876
		유	1	5.9	1	1.7	
	도구	무	17	100.0	58	-	
		유	-	-	-	-	
	전문인진단서 및 소견서	무	15	88.2	56	96.6	1.801
		유	2	11.8	2	3.4	
	현장조사 상황	무	17	100.0	56	96.6	
		유	-	-	2	3.4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진술의 수		2.71	1.105	3.41	4.761	-1.041
물적 증거의 수		0.29	0.588	0.12	0.422	1.357	
진술 및 물적 증거의 수		3.00	1.061	3.53	4.773	-0.789	

*; p<.05, **; p<.01, ***; p<.001, †; p<.10

4) 학대유형별 차이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는, 행위빈도 및 구체적 행위 내용 파악이 비교적 명확한 신체학대의 세부하위내용으로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를 구분하였다. 신체학대의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른 판정유형별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집단 비교

구체적 신체학대 행위는 흔들기/잡아당기기/밀치기/물기/목조르기, 손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기/꼬집기/할퀴기, 발로 차기/때리기, 도구로 때리기, 물건 던지기, 기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행위 내용에 따라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신체학대 유형 중 중복유형의 수를 살펴봤을 때 학대사례의 경우 평균 1.87개의 중복을 경험하고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평균 1.33개의 중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학대사례의 경우가 잠재위험사례의 경우보다 신체학대의 세부행위들이 중복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표 III-58〉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단위: 건, %)

구 분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흔들기/잡아당기기/밀치기/물기/목조르기	유	12	19.7	4	33.3	1.093
	무	49	80.3	8	66.7	
손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기/꼬집기/할퀴기	유	44	72.1	7	58.3	0.907
	무	17	27.9	5	41.7	
발로 차기/때리기	유	19	31.1	1	8.3	2.624
	무	42	68.9	11	91.7	
도구로 때리기	유	36	59.0	4	33.3	2.670
	무	25	41.0	8	66.7	
물건 던지기	유	1	1.6	-	-	-
	무	60	98.4	12	100.0	
기 타	유	1	1.6	-	-	-
	무	60	98.4	12	100.0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값
신체학대 행위 중복 수		1.87	.846	1.33	.492	2.997**

*, p<.05, **, p<.01, ***, p<.001, †; p<.10

(2)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집단 비교

구체적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를 살펴본 결과¹²⁾, 손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기/꼬집기/할퀴기의 신체학대행위는 학대사례의 경우에 72.1%, 일반사례의 경우 29%로 학대사례의 경우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아동들에게 직접적인 신체학대행위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아동들을 장시간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벌에 노출시키는 등의 기타 행위 역시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학대 행위의 중복 수준 역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9〉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단위: 건, %)

구 분		학대사례		일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흔들기/잡아당기기/밀치기/물기/목조르기	유	12	19.7	3	9.7	1,505
	무	49	80.3	28	90.3	
손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기/꼬집기/할퀴기	유	44	72.1	9	29.0	15,634***
	무	17	27.9	22	71.0	
발로 차기/때리기	유	19	31.1	5	16.1	2,404
	무	42	68.9	26	83.9	
도구로 때리기	유	36	59.0	14	45.2	1,590
	무	25	41.0	17	54.8	
물건 던지기	유	1	1.6	-	-	-
	무	60	98.4	31	-	
기 타	유	1	1.6	8	25.8	13,602***
	무	60	98.4	23	74.2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값
신체학대 행위 중복 수		1.87	.846	1.26	.575	3,612***

*, p<.05, **, p<.01, ***, p<.001, †; p<.10

(3)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집단 비교

구체적 학대유형에 따른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를 살펴본 결과, 신체학대의 하위

12) 시설 내 발생한 학대사례 수의 제한으로 신체학대의 세부유형에 대한 비교만 진행하였다.

행위 중 흔들기/잡아당기기/밀치기/물기/목조르기과 손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기/꼬집기/할퀴기의 행위에서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0〉 학대유형에 따른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단위: 건, %)

구 분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흔들기/잡아당기기/밀치기/물기/목조르기	유	4	33.3	3	9.7	3.552+
	무	8	66.7	28	90.3	
손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기/꼬집기/할퀴기	유	7	58.3	9	29.0	3.179+
	무	5	41.7	22	71.0	
발로 차기/때리기	유	1	8.3	5	16.1	0.438
	무	11	91.7	26	83.9	
도구로 때리기	유	4	33.3	14	45.2	0.497
	무	8	66.7	17	54.8	
물건 던지기	유	-	-	-	-	-
	무	12	100.0	31	-	
기 타	유	-	-	8	25.8	-
	무	12	100.0	23	74.2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값
신체학대 행위 중복 수		1.33	.492	1.26	.575	0.428

*, $p < .05$, **, $p < .01$, ***, $p < .001$, †; $p < .10$

5) 최종조치별 차이

아동과 행위자, 시설에 대한 최종조치 수준을 조치가 없었던 집단과 조치수준이 강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판정관련 증거에 따라 이들 조치수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1) 아동에 대한 최종조치 수준

아동에 대한 최종조치 수준은 시설장의 진술여부와 사진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장의 진술이 없거나 사진이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최종조치 수준이 강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물적 증거의 수는 아동에 대한 최종조치를 내리지 않은 집단에서보다 최종조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그 수가 더 높게 나타나 아동조치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61〉 판정관련 증거에 따른 아동 최종조치 수준

(단위: 건, %)

구 분		조치 없음		강력 조치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피해아동	유	53	88.3	64	92.8	0.743	
	무	7	11.7	5	7.2		
행위자	유	40	66.7	44	63.8	0.119	
	무	20	33.3	25	36.2		
시설장	유	15	25.0	8	11.6	3.937*	
	무	45	75.0	61	88.4		
진	동료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유	20	33.3	16	23.2	1.642
	무	40	66.7	53	76.8		
동료아동	유	17	28.3	26	37.7	1.262	
	무	43	71.7	43	62.3		
술	사회복지사 및 담당공무원	유	5	8.3	2	2.9	1.847
	무	55	91.7	67	97.1		
목격자	유	4	6.7	6	8.7	0.185	
	무	56	93.3	63	91.3		
부모 및 보호자	유	8	13.3	4	5.8	2.160	
	무	52	86.7	65	94.2		
기타 (학교 교사 등)	유	6	10.0	5	7.2	0.312	
	무	54	90.0	64	92.8		

물 적 증 거	녹음(오디오)	유	-	-	1	1.4	-
		무	60	100.0	68	98.6	-
	비디오(CCTV)	유	-	-	-	-	-
		무	60	100.0	69	100.0	-
	사진	유	4	6.7	21	30.4	11.604**
		무	56	93.3	48	69.6	
	신체적 상흔	유	3	5.0	5	7.2	0.278
		무	57	95.0	64	92.8	
	도구	유	-	-	1	1.4	0.876
		무	60	100.0	68	98.6	
	전문인진단서 및 소견서	유	2	3.3	9	13.0	3.879*
		무	58	96.7	60	87.0	
	현장조사 상황	유	3	5.0	2	2.9	0.380
		무	57	95.0	67	97.1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진술의 수		3.38	4.694	2.54	1.092	1.366	
물적 증거의 수		0.20	0.480	0.57	0.831	-2.996**	
진술 및 물적 증거의 수		3.58	4.677	3.10	1.226	0.775	

*; $p < .05$, **; $p < .01$, ***; $p < .001$, †; $p < .10$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수준

판정관련 증거에 따른 행위자의 최종조치 수준은 피해아동의 진술여부, 동료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의 진술여부, 목격자의 진술여부, 물적 증거인 사진의 존재 여부, 현장조사의 상황, 물적 증거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이나 목격자가 진술을 한 사례가 더 많거나 동료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의 진술이 더 적은 경우가 행위자에 대한 조치수준이 없는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 속했다. 또한 물적 증거의 수가 많은 경우 행위자의 조치수준이 보다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2〉 판정관련 증거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수준

(단위: 건, %)

분	유/무	조치 없음		강력 조치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피해아동	유	71	93.4	36	78.3	6.108*
	무	5	6.6	10	21.7	
행위자	유	47	61.8	24	52.2	1.101
	무	29	38.2	22	47.8	
시설장	유	17	22.4	9	19.6	0.134
	무	59	77.6	37	80.4	
진 동료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유	18	23.7	5	10.9	3.076 †
	무	58	76.3	41	89.1	
동료아동	유	23	30.3	10	21.7	1.055
	무	53	69.7	36	78.3	
술 사회복지사 및 담당공무원	유	4	5.3	1	2.2	0.696
	무	72	94.7	45	97.8	
목격자	유	5	6.6	12	26.1	9.093**
	무	71	93.4	34	73.9	
부모 및 보호자	유	9	11.8	2	4.3	1.962
	무	67	88.2	44	95.7	
기타(학교 교사 등)	유	7	9.2	9	19.6	2.696
	무	69	90.8	37	80.4	
물적 증거	유	-	-	1	2.2	-
	무	76	100.0	45	100.0	
비디오(CCTV)	유	-	-	1	2.2	-
	무	76	100.0	45	100.0	
사진	유	9	11.8	23	50.0	21.563***
	무	67	88.2	23	50.0	
신체적 상흔	유	4	5.3	1	2.2	0.696
	무	72	94.7	45	97.8	
도구	유	-	-	-	-	-
	무	76	100.0	46	100.0	
전문인진단서 및 소견서	유	4	5.3	5	10.9	1.318
	무	72	94.7	41	89.1	

현장조사 상황	유	3	3.9	7	15.2	4.837*
	무	73	96.1	39	84.8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진술의 수		2.64	1.262	2.35	1.059	1.395
물적 증거의 수		0.26	0.574	0.83	0.877	-4.285***
진술 및 물적 증거의 수		2.91	1.348	3.17	1.102	-1.186

*; p<.05, **; p<.01, ***; p<.001, †; p<.10

(3) 시설운영에 관한 최종조치 수준

판정관련 증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최종조치 수준을 분석한 결과, 동료아동의 진술 여부, 목격자의 진술여부에 따라 시설운영에 관한 최종조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동료아동들의 진술이나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던 사례가 시설운영에 관한 최종조치가 없었던 집단보다 조치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동료아동들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시설운영과 관련한 최종조치를 보다 강력하게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63〉 판정증거에 따른 시설 최종조치 수준

(단위: 건, %)

구 분		조치 없음		강력 조치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진	피해아동	유	57	93.4	23	92.0	0.057
		무	4	6.6	2	8.0	
술	행위자	유	38	62.3	16	64.0	0.022
		무	23	37.7	9	36.0	
	시설장	유	11	18.0	2	8.0	1.391
		무	50	82.0	23	92.0	
	동료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유	18	29.5	4	16.0	1.700
		무	43	70.5	21	84.0	

물 적 증 거	동료아동	유	18	29.5	15	60.0	6.972**
		무	43	70.5	10	40.0	
	사회복지사 및 담당공무원	유	4	6.6	-	-	-
		무	57	93.4	25	100.0	
	목격자	유	2	3.3	6	24.0	9.024**
		무	59	96.7	19	76.0	
	부모 및 보호자	유	6	9.8	2	8.0	0.071
		무	55	90.2	23	92.0	
	기타 (학교 교사 등)	유	6	9.8	2	8.0	0.071
		무	55	90.2	23	92.0	
	녹음(오디오)	유	-	-	1	4.0	-
		무	61	100.0	24	96.0	
	비디오(CCTV)	유	-	-	1	4.0	-
		무	61	100.0	24	96.0	
	사진	유	12	19.7	5	20.0	0.001
		무	49	80.3	20	80.0	
	신체적 상흔	유	2	3.3	1	4.0	0.027
		무	59	96.7	24	96.0	
	도구	유	-	-	-	-	-
		무	61	100.0	25	100.0	
전문인진단서 및 소견서	유	4	6.6	2	8.0	0.057	
	무	57	93.4	23	92.0		
현장조사 상황	유	3	4.9	1	4.0	0.034	
	무	58	95.1	24	96.0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진술의 수		3.20	4.661	2.80	1.190	0.617	
물적 증거의 수		0.34	0.680	0.44	0.870	-0.492	
진술 및 물적 증거의 수		3.54	4.639	3.24	1.300	0.464	

*; p<.05, **; p<.01, ***; p<.001, †; p<.10

10. 시설 아동학대사례 조치 및 미조치 결과

지금까지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시설 아동학대 사례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판정을 받은 90개 시설에서의 사례 특성을 살펴보았다. 시설 아동학대사례 조치 및 미조치 결과는 <그림 Ⅲ-2>에 제시하였다.

최근 3년간 165개의 시설로부터 586명의 아동에 대해 학대의심 신고·접수가 이루어졌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들 사례에 대한 조사 진행 후 학대사례 및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판정하였다. 총 165개의 시설들 중 90개 시설로부터 369명의 아동을 학대사례로 판정(54.2%)하였고 17개의 시설로부터 73명의 아동을 잠재위험사례로 판정(10.2%)하였으며 58개의 어린이집으로부터 144명의 아동을 일반사례로 판정(34.9%)하였다.

학대판정을 받은 90개의 시설들 중 1개의 시설을 제외한 89개(98.8%) 시설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95.6%),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50.5%), 시설에 대한 조치(88.7%)가 이루어졌다. 피해아동에겐 상담 및 교육, 심리검사를 비롯한 원가정 복귀, 일시보호, 격리조치 등이 취해졌으며, 행위자에겐 고소고발에서부터 해임, 전근, 경고, 주의 등이 내려졌고,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시설점검 및 운영정지, 교육 등의 조치가 내려졌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그림 Ⅲ-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1> 시설 아동학대의 사례 조치 및 미조치 결과

IV.

결론

- 1 결과요약
- 2 시사점
- 3 제언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 Ⅱ.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1. 결과요약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되어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시설 아동학대 사례를 시설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시설 아동학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로 판정한 유형까지 함께 포함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아동학대의 발생 현황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시설 아동학대 사례 및 학대의심사례는 2010년에 54개, 2011년에 40개, 2012년에 72개 시설에서 발생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한 학대의심 시설 수는 2010년과 2011년 사이 다소 감소폭을 보이다가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40개에서 72개로 큰 폭 증가하였는데, 특히 일반사례의 경우 11개 시설에서 33개 시설로 증가하여 일반사례의 폭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도별 학대판정비율은 66.7%, 55.0%, 44.4%로 나타났고, 이 기간 동안 학대판정율은 평균 54.5%였다. 이를 통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신고·접수되었던 시설 아동학대의심사례가 학대로 판정될 확률은 50%내외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각각 36개, 22개, 32개의 시설을 학대로 판정하여 이 기간 동안 총 90개의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로 판정한 이 90개의 시설들 중 경기도 지역에 분포하는 시설이 27개(30.0%), 경상북도 지역에 분포하는 시설이 9개(10.0%)로 나타나 경기도와 경상북도의 순으로 지역별 학대판정 시설의 분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로 판정한 시설의 수는 경기도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지만, 각 지역의 분포시설 수 대비 학대

발생 시설 수는 경상북도 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 시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특성

학대사례로 판정한 90개 시설에서 총 369명의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남아가 226명(61.2%), 여아가 143명(38.8%)으로 나타나 남아가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에서의 학대에 더욱 많이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아동들의 평균 연령은 12.16세로, 11세부터 16세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학대경험 아동 전체의 65.5%를 차지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저학년에 이르는 아동들이 시설 아동학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내 아동학대에 노출되었던 아동들 중 신체장애가 있는 아동은 3명(0.8%), 정신(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은 17명(4.6%)으로 나타나 학대를 경험했던 369명의 아동들 중 약 5%에 해당하는 아동이 신체 및 정신 장애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3) 시설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

한 개 시설에서 학대행위자가 2명 이상인 시설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학대가 발생했었던 90개 시설에서 총 114명의 학대행위자가 아동들에게 학대를 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성별이 파악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하고 남성이 52명(45.6%)이었고 여성이 61명(53.5%)이었다.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20대부터 80대 이상까지 폭넓은 분포를 보였으며, 114명의 학대행위자 중 연령이 41세~50세와 51세~60세에 해당하는 행위자가 각각 28명(24.6%)으로 나타나 41세~60세의 학대행위자가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파악할 수 없는 7명의 학대행위자를 제외한 107명 학대행위자의 평균 연령은 42.82세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학대행위자는 시설장이거나 생활지도원인 경우가 각각 28.1%, 51.8%로 나타나 전체 학대행위자 114명의 79.9%에 해당하였다. 즉, 최근 3년간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주 학대행위자는 시설장이거나 생활지도원임을 알 수 있었다.

4) 시설 아동학대 시설의 특성

학대로 판정한 90개 시설의 유형은 아동양육시설이 53개(58.9%), 공동생활가정이 19개(21.1%), 일시보호시설이 5개(5.6%), 장애인시설을 비롯한 미인가 시설 등의 기타 시설이 13개(14.4%)로 나타나 다양한 시설 유형 중 아동양육시설이 학대판정 시설 유형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을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아동복지시설에서의 학대발생은 전체 학대발생 시설 유형의 85.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시설 아동학대의 학대 특성

시설의 아동학대 발생을 의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를 한 신고자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가 24.5%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 및 기타 공무원이 23.4%, 시설종사자가 18.9%, 학교 교직원 및 상담사가 10%로 나타나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신고의무자들에 의해 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90개 학대판정사례 중 단일학대는 36개(40%), 중복학대는 54개(60%) 시설에서 발생하였다. 단일학대는 신체학대가 10개 시설, 정서학대가 11개 시설, 성학대가 8개 시설, 방임이 7개 시설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의 경우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중복으로 발생한 경우가 83.3%로 나타나,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경우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중복학대가 많이 이루어졌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성학대가 동시에 함께 발생한 사례와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방임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는 중복학대 전체의 각각 1.9%, 7.4%에 해당하였다.

신체학대의 경우 하위 중복행위를 포함하여 학대행위자가 손바닥으로 아동을 때리거나 꼬집고 무는 행위가 전체 신체학대의 38.9%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31.9%에 해당하였다. 사용된 도구로는 몽둥이나 회초리, 빗자루와 같은 막대기 형태가 가장 많았고,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45.9%가 상처나 멍 등의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 하위 중복행위를 포함하여 12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생식기나 가슴, 그 외의 몸을 만지는 행위가 58.4%로 가

장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를 판정받은 시설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던 학대행위로는 학대행위자가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로 전체 정서학대의 34.1%에 해당하였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가 23.9%로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 아동을 위협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방임행위가 전체의 36.8%로 가장 많이 발생한 방임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에서 학대행위는 1회 발생한 경우가 많았지만, 장기간 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도 각 학대유형별 30%~50% 수준으로 나타나 2회 이상 장기간 학대에 노출되었던 아동들이 30%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6) 시설 아동학대 판정유형별 특성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신고·접수되면 현장조사 및 사례회의를 통해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판정하게 된다. 시설 아동학대사례를 잠재위험사례 또는 일반사례와 함께 비교한 결과 각 판정유형별 중복학대 유무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의 경우 잠재위험사례나 일반사례보다 중복학대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의 경우 중복학대 비율이 전체 학대사례의 약 60%에 해당하였지만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약 29%, 일반사례의 경우 17%에 그쳐 집단 간 큰 격차를 보였다.

그 외에도 피해아동, 행위자, 시설운영에 관한 최종조치의 수에서도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학대사례의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가 1개 이상인 사례가 전체의 약 92%로 나타났지만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약 50%로 나타났다. 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에 있어서 학대사례의 경우 1개 이상의 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전체의 약 81%에 해당하는 반면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약 35%, 일반사례의 경우 약 24% 수준에 불과하였다. 시설운영에 대한 최종조치에 있어서도 학대사례의 경우 1개 이상의 최종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전체의 약 89%에 해당하였고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약 59%, 일반사례의 경우 약 26%가 해당하여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아동이나 행위자, 시설운영과 관련한 최종조치의 수는 학대사례가 잠재위험사례나 일반사례에 비하여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시설 아동학대 최종조치 대상별 특성

학대로 판정한 90개 시설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취했던 최종조치를 분석한 결과, 학대가 발생했던 모든 시설에는 피해아동이나 학대행위자, 어린이집운영과 관련하여 최소 하나 이상의 최종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 369명에 대한 최종조치는 13명을 제외한 총 356명(96.5%)에게 내려졌는데, 이들에게 내려진 최종조치로는 교육, 치료, 상담 및 서비스가 47.5%, 전원조치가 36.6%로 나타났다. 이 369명의 아동들 중 학대수준이 높은 아동을 각 시설에서 선별하여 이들 아동에게 내려진 최종조치를 분석한 결과, 교육, 치료, 상담 및 서비스가 42.4%, 전원조치가 30.1%로 나타나 전체 피해아동과 학대수준이 높은 아동 모두 비슷한 내용의 최종조치를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114명의 학대행위자에게 내려진 최종조치를 중복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파악이 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하고 82.5%에 해당하는 94건의 사례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해임 또는 전근이 23.6%로 나타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중 가장 많이 취해진 조치결과로 확인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상담 및 교육, 치료프로그램 실시가 12건(9.4%), 자진퇴사 20건(15.8%)의 순이었다.

90개 시설 중 80개(88.9%)의 시설이 시설운영에 관한 최종조치를 받았는데, 중복을 포함하여 모니터링을 조치 받은 사례가 54건(43.5%), 경고 및 주의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5건(20.2%),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14건(11.3%)으로 나타났다.

8) 시설 아동학대 최종조치 수준별 특성

최종조치는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집단과 조치수준이 보다 강력한 집단(치료, 고소 고발, 시설폐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최종조치의 수준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다르게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경우 학대판정 유형이 학대사례인 경우가 최종조치 수준이 강력한 집단의 약 83%에 해당하여 많은 학대사례에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가 행해지지 않

은 집단에서는 행위자가 남자인 사례가 약 26%로 나타났지만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 집단에서는 행위자가 남자인 사례가 약 46%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집단보다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집단에서 정서학대는 더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방임의 경우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집단보다 조치가 없는 집단에서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중복학대 역시 조치가 없는 집단보다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집단에서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신체학대의 경우 도구를 사용한 경우가 피해아동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집단보다 강력한 조치를 한 집단에서 더 많이 분포하였고 신체학대나 정서학대의 행위자가 남자인 경우 역시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집단보다 강력한 조치가 행해진 집단에서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설운영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도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9) 시설 아동학대 판정근거 특성

아동학대를 판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는 진술(testimonial evidence) 및 물적 증거(physical evidence)가 있다. 이들 근거를 학대판정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는 사진의 유무 및 물적 증거의 수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의 경우 학대사례에서는 약 43%가 뒷받침되었던 반면 잠재위험사례 집단의 경우 약 12%에 그쳤다. 물적 증거의 수 역시 학대사례 집단의 경우 평균 0.7개로 나타났으나 잠재위험사례 집단의 경우 약 0.3개에 그쳤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 및 행위자, 시설장 등의 진술보다는 사진의 유무 및 물적 증거의 수가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간 차이를 결정하는 데 보다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진의 유무와 물적 증거의 수는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두 집단 간에는 목격자의 진술 유무에 따라서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목격자의 경우 학대사례에서는 목격자의 진술 중 약 14% 정도가 주요한 역할을 한 반면, 일반사례의 경우 약 2% 수준에 그쳤다. 이를 통해 학대 목격자의 진술이 학대를 판정하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의 경우 동료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의 진술에 있어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해당 진술이 약 12%에 그친 데 반해 일반사례의 경우 약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동료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의 진술은 일반사례를 판정하는 데 있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최종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집단과 강력한 최종조치를 받은 집단에 따라 이 판정근거 역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가 강력한 집단에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시설장의 진술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물적 증거로써 사진과 전문인진단서 및 소견서가 더 많이 뒷받침되었으며 물적 증거의 수도 더 많았다. 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가 강력한 집단 역시 사진과 물적 증거의 수가 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많이 뒷받침되었고, 이에 더해 목격자의 진술이나 현장조사의 상황이 더욱 많이 뒷받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강력한 조치를 한 집단은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집단에 비해 동료아동의 진술이 2배 이상 많이 뒷받침되었고 목격자의 진술도 약 6배 이상 더 많이 뒷받침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사점

1) 시설 아동학대 높은 학대 판정율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을 통해 본 지난 최근 3년간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접수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던 165개의 시설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은 90개로 집계되어 학대판정율이 54.5%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가 의심되어 신고·접수되었던 2개 시설 중 1개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했던 것으로 판정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아동학대가 의심되었던 시설은 3년간 전체 165개 시설로 많지 않은 규모였지만 학대판정율은 비교적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각 판정사례별 해당 아동 수는 학대사례가 369명(62.9%), 잠재위험사례가 73명(12.5%), 일반사례가 144명(24.6%)으로 보고되어 학대판정율 보다 시설에서 학대를 경험했던 아동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설 수 대비 판정 아동 수가 4.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1개 시설에서 평균 4명 이상의 아동이 학대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시설 아동학대는 학대판정을 뿐만 아니라 1개 시설에서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들의 비율도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복지법상에는 아동복지시설 및 기타 시설이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보호아동의 경우 가정 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 보호, 적절한 지도를 수행해야 할 시설에서의 아동학대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 적절한 돌봄의 부재 하에서 긍정적 발달을 이루는 것을 저해하기 때문에 제2차 피해의 가능성을 남긴다. 그러므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시설 아동학대 높은 신고의무자 비율

아동복지법 상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신고자를 규정하여 신고의무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신고자들의 신고의무에 대한 강제성의 결여로 인해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시설에서 발생한 90개 시설의 아동학대사례는 신고자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및 사회복지 및 기타 공무원, 학교교직원 및 상담원 등으로 집계되어 신고자 전체 중 신고의무자가 7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 상담신고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약 32%로 나타났다(김형모, 2011)는 최근의 기록을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경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수준의 심각성이나 피해아동들의 학대상황의 인지 등이 외부 교사나 관련 사회복지사들에게 비교적 잘 노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신고의무자들은 일반 대중들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 지식뿐만 아니라 아동보호 책임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접수가 다른 일반인들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보다 학대판정율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신고의무자들이 아동권리

및 보호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주지시킨다. 아동들이 학대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신고의무자들의 촉매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3) 시설 아동학대 높은 중복학대 비율

학대로 판정한 90개 시설 중 중복학대가 발생한 시설은 54개 시설에서 나타나 학대 판정 시설의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복학대가 발생하였던 이들 54개 시설에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동시에 함께 발생한 시설이 45개(83.3%) 시설로 보고되었다. 이를 통해, 시설에서의 아동학대는 중복학대의 비율이 높고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발생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여러 학대유형 중 신체학대는 상처 등의 상흔이 남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많지만, 정서학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부의 노출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유형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학대사태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되었을 시, 피해아동들의 인지가 주요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아동학대를 판정하는 데 있어 피해아동들의 학대에 대한 인지수준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추측케 한다. 그러므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하겠다.

4) 시설 아동학대 심각한 신체 및 정서학대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연령이 11세와 16세 사이인 경우가 아동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들이 반항이나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심각한 수준의 학대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을 조른 행위부터 뺨을 수차례 때린 행위,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한 행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게 한 행위, 아동의 머리에 의자를 던져 피가 나게 한 행위, 아동의 성기를 때리거나 가위로 집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하여 다른 아동들 앞에서 부모의 욕을 하여 해당 아동이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나 아동의 의사

에 반하여 아동이 발이 아픈 상황에서도 강제로 아동에게 10km를 걷게 한 행위 등과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가 발생하였다. 아동의 연령대가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고등학생 저학년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아동들에게 행해지는 행위자체가 엄격하고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항 및 규칙을 어기기 때문에 훈육이 필요하다 하여 아동의 인격을 무시하는 강력한 체벌 및 언어적 폭력 등은 아동들을 적절하게 지도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시설에서 종사하는 아동보호 의무자들은 무조건적인 체벌과 훈육보다는 아동들의 반항 및 규칙 어김 행동의 저변에 있는 문제 원인을 찾아 지속적인 관심으로 문제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접근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시설 아동학대 물적 증거 기반 사례판정

증거는 진술과 물적 증거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증거들 중 실제 사례판정을 하는 데 있어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증거들을 파악하기 위해 학대사례를 잠재위험사례 또는 일반사례와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를 판정하는 데 있어 각각 사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진술보다는 물적 증거가 사례를 판정하는 데 있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피해아동이나 행위자의 진술보다는 제3자인 목격자나 동료아동, 동료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의 진술이 각 사례판정에 다소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적 증거의 수나 사진과 같은 확실한 물적 증거가 사례판정을 하는 데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및 스크리닝 척도는 각 사례를 구분하고 아동의 안전여부 및 향후 조치 및 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데 활용되므로, 수집된 정보에서 특히 객관성의 담보가 더욱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들은 상처가 나거나 멍이 들어도 빨리 아물게 되며 신고 당시에는 아무런 외적인 징후를 보이지 않을 수 있는(이호균, 2006) 맹점이 있기에 단순히 외적으로 나타난 증거나 명확한 증거에만 의존하는 것은 심각한 학대의 발견이라는 측면에만 주요할 수 있다. 학대로 판정하기 위한 판단은 신중해야 하고 상황이나 맥락 등도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보완함으로써 향후 경미하거나 산발적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대를 파악하여 아동들이 학대가 없는 안전

망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6) 총평 : 집단시설의 문제점

연구 분석을 통해 시설 내 아동학대의 특성을 추론해볼 수 있었다. 어린이집과 달리 시설 내 아동들은 어린이집 아동들에 비해 피해아동들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학대를 인식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장 및 생활지도원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 내 요보호 아동들에게 있어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동들은 주요 학대행위자인 이들을 쉽게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때문에 시설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에 의한 신고보다는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높다.

특히, 시설은 시설의 폐쇄적인 특성 상 내부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외부로 노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심각한 수준의 결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시설에서의 아동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피해아동들보다 훈육 형태의 심각한 체벌 및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반항 및 규칙 위반에 대한 훈육은 시설의 특성과 맞물려 강력한 체벌과 심각한 언어폭력으로 드러난다. 또한 시설에서의 피해아동 역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다는 시설 대비 판정 아동 수의 비율이 더 높다. 즉, 시설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들보다 실제적으로 더 강력한 수준의 학대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수의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 아동학대의 특성으로 인해 시설에서는 아동들이 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학대를 일시적으로 경험한 아동에 비해 우울과 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정·정익중, 2013). 또한 학대경험의 지속성은 우울성향과 같은 후유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동현 외, 2003). 즉, 시설 내 아동학대가 조기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시설 아동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학대행위자 중 남성은 12.6%¹³⁾를 차지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행위자가 여성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데 반해 시설의 경우 학대행위자 중 남성이 45.6%를 차지하여, 시설 아동학대의 경우 행위자가 남성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13) 이는 본 연구의 첫 번째 시리즈인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I: 어린이집을 중심으로”의 분석내용을 참고 함.

높다.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 학대행위자의 비율은 시설 내 신체학대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점과 연관시켜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3. 제언

오랫동안 유교문화가 바탕을 이뤘은 우리나라에선 아동학대가 발견되더라도 범죄가 아닌 가정 및 시설 내 훈육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체벌을 아동훈육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어 왔다. 본 연구가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체학대의 경우 반항 및 규칙 위반에 대해 훈육의 명목으로 시설 내에서 아동들에게 강력한 체벌이 행해졌으며 시설 아동학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서학대의 발생비율이 높았다. 시설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정서행위를 하는 비율이 33%~34% 내외로 높았으나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아동을 가두는 정서적 행위가 많은 반면 시설 아동학대의 경우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의 정서행위가 발생한 비율이 약 23%로 어린이집의 7%보다 단연 높은 비율이었다. 또한 아동이 시설 직원 간 싸움 외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비율도 약 9%로 나타나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약 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시설 내 심각한 수준의 신체학대나 정서학대 행위는 아동들의 반항 및 규칙 위반에 대한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내 종사자뿐만 아니라 아동들 역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체벌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었다.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상처나 명의 흔적, 학대행위자의 도구사용 여부 등이 학대판정사례별로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되지 못했던 점들은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아동들이 설사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신체적 체벌이나 정서적 모욕 및 폭언이 잘못된 행위에 대한 훈육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아동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교정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반드시 체벌이나 언어적 폭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체벌이나 언어적 폭력 대신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동의 문제행동 저변에 있는 근원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 내 생활지도사의 전문성

제고가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더욱이 아동들 역시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한 교정이 체벌이나 언어적 폭력 형태가 아닌 긍정적인 훈육의 형태가 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교육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설의 경우 폐쇄적인 특징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하여도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주로 빈곤 및 취약계층의 요보호 아동들이 많으므로 이 아동들을 위해 탈시설화의 방향이 필요하며 요보호 아동들이 보다 가정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룹홈 위탁으로의 전환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시설보다는 치료가정위탁과 같은 전문 가정위탁, 그룹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개선 역시 필요하다. 또한 아동은 아직 발달을 이루어 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은 충격에도 그 충격의 여파가 지속되거나 강하게 남을 수 있고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학대는 아동의 생애과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가 허용될 수 없는 행위임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것은 피해아동들뿐 아니라, 시설종사자, 그리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 요구된다 하겠다.

이 외에도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설 운영상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기반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내 주요 학대행위자는 시설장 및 생활지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직접적으로 지도·양육한다는 점에서 시설종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한 시설 종사자의 요인을 파악하고자 점검 및 변화를 유도하는 기회의 장(정기적 워크숍,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둘째,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시 실제 학대 발생뿐 아니라 인력, 물리적 환경 등 학대유발 요인 점검을 위한 지침(체크리스트 등 포함)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침 마련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셋째,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인력 충원 및 규정 근무시간 보장, 업무량 조절,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등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종사자들의 과중한 업무는 아동들에게 행해지는 일관적 또는 객관적 돌봄을 저해할 수 있다. 종사자 1명당 담당 아동 수를 조정하고 아동 간 또는 아동과 종사자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환경을 사전에 개선하여 학대유발

요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종사자와 아동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법·제도적으로 시설의 공간배치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고 아동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개방형 구조, CCTV-녹음가능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학대가 발생하여도 외부로 쉽게 노출될 수 없고, 외부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실제 증거가 없다면 학대로 판정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개방적인 시설환경으로의 구조 변화는 학대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2000년대 아동복지법 개정을 이끌어 내었고 이러한 흐름 안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양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학대가 점차 사회문제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아동학대를 가정이나 시설 내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정이나 시설 내 아동학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특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하는 국내 연구들 역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시설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설 내 아동학대 특성에 대해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전무하였기에 이를 첫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시설 아동학대와 관련한 다양한 변수를 분석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측면을 지닌다. 국내에는 아직 시설 아동학대의 특징만을 분석한 연구가 없을뿐더러, 시설 아동학대 사례 수의 제한으로 인해 시설 아동학대와 관련한 다양한 변수를 충분히 분석하는 데 있어 한계로 작용하였다. 이는 시설 아동학대 관련 연구들이 축적되고 관련 사례가 충분히 확보됨으로써 향후 보완될 수 있는 점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추후 다양한 변수들을 반영하여 양적 연구 및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참고문헌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 Ⅱ.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 권오걸(2012). 전문증거의 개념과 범위. 형상법학회, 24(1), 217-246.
- 김성경·김혜영·최현미(2013). 아동복지론(3판), 경기도 파주: 양서원.
- 김수정·정익중(2013). 아동학대가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효과와 최신효과에 대한 중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3, 1-28.
- 김형모(2011). 아동학대 실태 및 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 분석. 임상사회사업연구, 8(2), 95-113.
- 문영희(2009). 아동학대의 의의와 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20(3), 549-569.
- 성태제(2011). 현대 기초통계학: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안동현·장화정·이영애·홍강의·이재연·이양화·조홍식·곽영숙(2003). 신고된 사례의 아동학대 실태와 후유증 연구. 아동권리연구, 7(1), 1-20.
- 이호균(2006).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20(1), 163-192.
- 보건복지부(2012). 아동학대 사망관련 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 연구.
- 보건복지부(2013a). 2013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 보건복지부(2013b). 2013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2012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한미현(2008). 아동보호서비스의 실제: 아동학대의 사정 및 사례판정. 경기도 파주: 집문당.
- Barnett, D. Manly, J. T., & Cicchetti, D. (1993). Defining child maltreatment: The interface between policy and research. Child abuse, child development, and social policy. 8, 7-73.
- Knutson, J. F., DeGarmo, D., Koepl, G., & Reid, J. B. (2005). Care neglect,

- supervisory neglect, and harsh parenting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aggress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Child maltreatment*, 10(2), 92-107.
- Mennen, F., Kim, K., Sang, J., & Trickett, P. K. (2010). Child neglect in multiply-maltreated urban adolescents: Definition and identification of children's experiences. *Child Abuse and Neglect*, 34, 647-658.
- Trickett, P. K., Mennen, F., Kim, K., & Sang, J. (2009). Emotional abuse in a sample of multiply-maltreated, urban adolescents: Issues of definition and identification. *Child Abuse and Neglect*, 33(1), 27-35.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 II.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 Ⅰ 인 쇄 일 : 2013년 12월
- Ⅰ 발 행 일 : 2013년 12월
- Ⅰ 발 행 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558-1391)
- Ⅰ 발 행 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
- Ⅰ 편 집 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구개발팀

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 II.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